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일 시 : 2017. 4. 13.(목) 14:00~16:00
장 소 :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층)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열린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일 시 : 2017. 4. 13.(목) 14:00 ~ 16:0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층)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열린네트워크
- 주 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시 간	내 용
14:00~14:05	❖ 개회선언
14:05~14:10	❖ 인사말씀 -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14:10~14:15	❖ 축 사 - 김남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14:15~14:20	❖ 축 사 - 변경택 (사)열린네트워크 대표
좌장 :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14:20~14:45 (25분)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14:45~15:00 (15분)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 김예원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15:00~15:15 (15분)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의 평가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5:15~15:35 (20분)	[발제 4]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부산)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경남)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15:35~15:55 (2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5~16:00	폐 회

◆ 발제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1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25
김예원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의 평가	77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제4】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91
(부산)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경남)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93
	97

◆ 부록

【부록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05
【부록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1. 들어가며

2017. 4. 10.은 장애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정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말까지 총 10,320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접수되었고, 그 중 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은 10,077건이었으며, 이중 위원회의 조사대상 결정사건은 4,608건(46%), 조사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등이 된 사건은 5,469건(54%)이었다.

조사대상 사건으로 처리된 4,608사건 중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권고한 사건은 383건, 조사중 해결된 사건은 2,335건(이와 별도로 진정인이 진정 해결되어 취하한 사건은 645건임), 합의종결된 사건은 355건, 위원회 조정성립된 사건은 5건으로, 위원회 의결 조사대상 사건 중 3,078건(66.8%)이 차별시정이 이루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일상생활 도처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살펴보면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 현실적으로 일정규모 이하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권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과 위배되는 상충법률이 존재한다는 점 ▲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세부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동안의 사회·문화적, 기술적 급속한 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사건 53% 증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 11. 25.) 이후 2016.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은 총 23,413건으로, 이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10,973건인 전체 차별사건의 46.8%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 4. 11.) 이전 15.3%였던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비중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9년간 평균 53.9%로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 제고와 신장에 큰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조).

〈표 1〉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 2016.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6. 12.	진정건수	23,413	12,440	10,973
		비율(%)	100.0	53.1	46.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6. 12.	진정건수	19,141	8,824	10,320
		비율(%)	100.0	46.1	53.9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10배 증가

200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973건이며, 그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10,320건이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10건이 접수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93.2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이후 약 10배 증가하였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단위: 건)

연도(년) 구분	총	장차법 이전	2001(11~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1~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시행 이후	2008(4.11~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진정건수	10,97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0,32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월평균	60.3	10	6.5	1.7	1.5	4.5	10.1	9.7	21.3	16.5	93.2	67.2	60.4	141.3	73.8	111.6	109.3	94.9	95.5	124.3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지체장애관련 진정사건이 전체사건의 33%, 시각장애인 진정사건 증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체 장애인이 3,403건(33%), 시각장애인이 2,295건(22.2%), 발달장애인이 1,290건(12.5%), 청각장애인이 1,137건(11%), 뇌병변장애인이 741건(7.2%),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976건(9.5%) 순으로, 지체장애인과 관련한 사건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3> 참조).

〈표 3〉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0,320	3,403	2,295	741	1,137	1,290	73	406	976
	비율	100.0	33.0	22.2	7.2	11.0	12.5	0.7	3.9	9.5

이는 201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51.5%인데 비하여 위원회 진정사건은 33%를, 등록 뇌병변장애인은 10.1%에 비해 진정사건은 7.2%를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비율은 적다.

그러나, 시각, 청각, 발달장애, 정신장애 관련 사건은 등록장애인 구성비(32.6%)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많은 비중으로 접수(50.1%) 되었다.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환경의 대중화에 따라 시각장애인 진정이 등록 시각장애인 비율에 비해 2배(등록 시각장애인 비율 10.2%, 인권위 진정비율 22.2%) 이상 높았다.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건이 전체 장애차별사건의 58.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6,081건으로 58.9%)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역별 사건비율은 재화·용역 일반이 15.2%, 시설물 접근이 12.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5.1%, 보험·금융서비스가 6.5%, 이동 및 교통수단이 6.8%, 문화·예술·체육이 3.0%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 체	접수	10,320	632	1,025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1,175	886
	비율	100.0	6.1	9.9	58.9	15.2	6.5	12.3	6.8	15.1	3.0	5.0	11.4	8.6

이를 장애차별 영역별 월평균 사건수로 살펴보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65.4건, ‘괴롭힘 및 기타’영역이 22.2건, ‘고용’영역이 6.8건, ‘사법·행정 및 참정권’영역이 5.6건, ‘교육’영역이 11건으로, 월평균 접수 건수 111건 중 고용과 교육영역의 진정사건이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 11.25. ~	2008. 4.11. ~	2009. 1. 1. ~	2010. 1. 1. ~	2011. 1. 1. ~	2012. 1. 1. ~	2013. 1. 1. ~	2014. 1. 1. ~	2015. 1. 1. ~	2016. 1. 1.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2008. 4. ~ 2015. 12.)
		2008. 4.10.	2008. 12.31.	2009. 12.31.	2010. 12.31.	2011. 2.31.	2012. 12.31.	2013. 12.31.	2014. 12.31.	2015. 12.31.	2016. 12.31.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10,320
	월 평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5	124.3	111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632
	월 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1,025
	월 평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11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2	6,081
	월 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5	65.4

구 분		2001. 11.25. ~ 2008. 4.10.	2008. 4.11. ~ 2008. 12.31.	2009. 1. 1. ~ 2009. 12.31.	2010. 1. 1. ~ 2010. 12.31.	2011. 1. 1. ~ 2011.1 2.31.	2012. 1. 1. ~ 2012. 12.31.	2013. 1. 1. ~ 2013. 12.31.	2014. 1. 1. ~ 2014. 12.31.	2015. 1. 1. ~ 2015. 12.31.	2016. 1. 1. ~ 2016. 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9년 (2008. 4~ 2015. 12.)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7	43	521
	월 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1	3.6	5.6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5	2,061
	월 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9	22.2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 2016년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504건을 집단으로 진정함.

마.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뇌병변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재화·용역 일반’에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별 경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간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 상 버스 및 철도 이용, 도로 및 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사례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웹 접근성 등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 관련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사례가 많았다. 한편,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표 6〉 참조).

특히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진정이 1,036건으로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0,320	3,403	2,294	741	1,137	1,290	73	406	976	
고용	632	229	67	50	102	48	12	36	88	
교육	1,025	429	81	54	57	327	4	13	60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1,567	513	328	181	128	232	11	57	117
	보험·금융	675	154	123	66	126	101	7	56	42
	시설물 접근	1,265	867	182	92	16	13	1	3	91
	이동 및 교통수단	701	367	118	54	23	40	5	2	92
	정보접근·의사소통	1,560	37	1,036	17	329	26	6	2	107
	문화·예술·체육	313	64	26	16	59	119	-	7	22
사범·행정	358	73	83	19	43	73	5	19	43	
참정권	163	58	29	7	3	8	-	3	55	
괴롭힘 등	1,175	305	69	115	208	224	12	138	104	
기타	886	307	152	70	43	79	10	70	155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가. 고용 영역

■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의 비중 확대(공공부분에 비하여 2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접수된 고용차별 사건 632건 중에서는 ‘모집 및 채용’(38.8%) 분야의 진정 접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퇴직 및 해고’(22.3%), ‘임금·복리·후생’(13.1%)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공공영역은 211건, 민간영역은 421건으로, 민간영역이 공공영역에 비해 진정이 많아 향후 민간영역에서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표 7〉참조).

〈표 7〉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접수 세부유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632	245	83	59	15	26	141	3	60
	비율	100.0	38.8	13.1	9.3	2.4	4.1	22.3	0.5	9.5
	공공	211	117	7	29	11	6	18	2	21
	민간	421	128	76	30	4	20	123	1	39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고용영역]

〈사례 1: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진정인은 청각장애2급 장애인으로,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 자격을 명시하여 차별을 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해시험에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독해시험에서 만점(495점)을 받는다하더라도, 600점 이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직무특성 상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어점수 자격 요건이 필수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이 채용하고자 하는 신입사원의 핵심직무는 IT사업 등의 기획 및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운영으로, 영어 소통은 이를 원활하게 하는 부가적 기능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진정기관과 유사업종인 ○○전자 주식회사의 경우, 건청인과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용 TEPS 시험점수(380점)만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5급 공채(행정직, 기술직, 외무직) 모집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원자격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자격을 명시한 것은 피진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 신입사원 지원 자격으로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정인은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공단이 일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직권 면직 시켰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감당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였으나, 추후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 수용하였다.

나. 교육 영역

■ 수업·시험 등 편의 미제공 진정 다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접수된 교육차별 사건은 총 1,025이다. 그 중 ‘수업·시험 등 편의 미제공’(16.9%)과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12.4%)에 관한 진정이 높았고, ‘특수학급설치’(8.4%), ‘전·입학 거부 제한’(7.0%),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5.7%), ‘괴롭힘’(3.5%) 등의 순서로 나왔다(〈표 8〉참조).

〈표 8〉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1,025	72	58	173	127	86	36	473
	비율	100.0	7.0	5.7	16.9	12.4	8.4	3.5	46.1
	공공	860	32	33	126	115	83	26	445
	민간	165	40	25	47	12	3	10	28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교육영역]

〈사례 1 :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진정인은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전형위원회 위원장은 구술시험 시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서류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형위원 중 한 명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새로운 자료 발굴을 해야 하나 진정인의 경우 언어장애로 인해 용이할 것 같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학교가 구술시험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운용함으로써 진정인이 구술시험에서 자신의 지적능력, 사고능력, 가치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설령 신체적인 장애가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인 등의 활용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기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학교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시종일관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하였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동료 학생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주 4시간 순회수업만 받도록 하고, 현장견학 및 외부활동 등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킨 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바, 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학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교육감에게,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소속한 학교의 장을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 및 교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

‘재화·용역 영역’은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서비스 이용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접수율 또한 가장 높다. 세부 유형별로는 ‘재화·용역 일반’이 25.8%로 사건 접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25.7%, ‘시설물 접근’이 20.8%, ‘보험·금융’이 11.1% 순으로 높았다(〈표 9〉참조).

〈표 9〉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진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비율	100.0	25.8	11.1	20.8	11.5	25.7	5.1	100.0
	공공	2,417	693	63	554	396	508	203	491
	민간	3,664	874	612	711	305	1,052	110	30

‘재화·용역 영역’과 ‘장애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영역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영역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영역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진정 비율이 높았다(〈표 6〉참조).

한편 ‘사법·행정·참정권’영역은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투표소 등에서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과 관련된 사건으로, 9년 간 진정접수 건수는 521건이었다.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서비스 영역]

■ 재화·용역 일반 영역

〈사례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환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위원회는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사본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점자자료화 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사본 발급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또는 점자자료, 녹음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상기 권고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보장〉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에 미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이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예 : 주차 이용신청,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사례 3 :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구민회관을 방문하였으나 “여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가 없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
며, 피진정기관이 보조인력의 배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별도 채용할 수 없는 관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조인력으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보조
인력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피진정기관에서는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예산
상의 문제로 보조인력의 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피진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
임과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사례 4 : 국어능력 인증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진정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 요건으로 2012년 5월 재단법인
0000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6월경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000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 및 경
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0000연구원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
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0000연구원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주관·실시하면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아무런 편
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0000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
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여 수용되었다.

〈사례 5 :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진정인은 “A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A보험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의 지적장애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하고 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보험사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심사를 진행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요하였다.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영역

(사례 1 :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카드와도 구별이 어렵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와 재질, 규격이 동일하여 촉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 관리를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결과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에 점자 표기를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스티커를 제작·교부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집회 참가 후 체포되어 세 차례 가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절차상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권의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과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정신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을 수사 및 심문함에 있어 의사소통가능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생활안전·수사·형사·경비교통과 등 수사 관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권고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참정권 영역

〈사례 : 선거 시 접자투표용구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투표보조용구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투표소에 투표보조용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동행했던 가족에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피진정인은 「헌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따라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도는 비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선거원칙에 반하여 장

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라. 괴롭힘 등 영역

‘괴롭힘 등’ 영역은 매년 ‘재화·용역’ 영역,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 다음으로 진정접수 비율이 높은 영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괴롭힘으로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1,175건이었으며, 주요 피해자는 지체장애인(305건)과 발달장애인(224건), 청각장애인(208건) 그리고 정신장애인(138건) 이었다(〈표 6〉참조).

세부 유형별로는 모욕 및 비하(678건, 57.7%), 폭행 및 학대(193건, 16.4%), 금전적 착취(132건, 11.2%)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고, 민간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1,011건)가 공공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164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은 주로 모욕 및 비하 사건이 57.7%를 차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친구나 가족, 지인, 고용주, 시설주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0〉참조).

〈표 10〉 괴롭힘 등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175	22	30	27	193	132	678	93
	비율	100.0	1.9	2.6	2.3	16.4	11.2	57.7	7.9
	공공	164	6	2	4	30	5	98	19
	민간	1,011	16	28	23	163	127	580	74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괴롭힘 등 영역]

〈사례 1 : 장애인시설에서의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입소 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월 5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퇴소 시 피진정인에게 받은 실수령액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입소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와 장애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인당 25만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시설통장에 입금하고, 생활인들에게는 용돈으로 8만원씩을 지급한 후, 잔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회계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생활인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을 수사의뢰하는 동시에 피진정인에게 2008. 4.부터 2011. 3.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 해당 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의 폐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 구청은 피진정시설에 행정처분 후 시설 회계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례 2 : 장애인시설에서의 예배참석 및 현금강요 등>

피진정시설의 전직 직원인 진정인은, 시설장인 피진정인이 생활인들에게 예배참석, 십일조 및 현금, 후원 등을 강요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예배참석을 이유로 생활인에게 외출을 제한하고 쾰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예배참석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현금, 후원금 등을 내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상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는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제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해당시설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 지자체와 관련시설기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3 :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진정인은 “사회복지 법인 A대표이사 등이 장애인들을 폭행·체벌하였고 거주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의료조치 소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니 피진정인들을 조사 및 처벌해 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부분은 대량으로 후원 물품이 들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관할 ○○시청에서 주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의료조치 소홀 부분은 거주인이 총 14회의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있었으며, 부당한 노동 강요 부분은 물건을 차로 옮겨준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일회성 등으로 보여져 이들 부분은 각각 기각하였다.

그러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체벌과 관련하여서는 A대표이사가 김○○ 등의 거주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대표이사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행사하며 과도한 체벌을 하였고, 법인 산하 공판장 B 사무국장은 김○○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과도하게 체벌한 사회복지 법인 A 대표이사 와 법인 산하 공판장 B 사무국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여 관련시설의 폐쇄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4,608건(45.8%) 중 시정권고 383건, 조사중 해결 2,335건, 합의종결 355건, 조정 5건 등 모두 3,078건(66.8%) 차별 시정

위원회 설립 이후 15년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10,973건이며(〈표 2〉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10,695건(97.5%)을 처리하였다(〈표 11〉 참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 살펴보면, 지난 9년 간 접수된 사건은 10,320건이며(〈표 3〉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10,077건을 (97.6%) 처리하였다(〈표 12〉 참조).

10,077건의 처리 사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4,608건(45.8%)이고, 나머지 6,009건(54.2%)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¹⁾에 따라 각하된 경우(5,408건, 53.4%), 조사중지된 경우(16

1) 각하 대상인 경우는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 진정

건, 0.3%), 타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45건, 0.5%)이다.

4,608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83건은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등을 통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2,335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은 355건,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건으로, 총 3,078건(66.8%)의 사건이 차별 시정되었다. 그 외 1,530건은 조사 결과, 차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처리되었다(〈표 12〉 참조).

〈표 11〉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659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38

〈표 12〉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04.11.~2016.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10,077	4,608	3,07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구성비 (%)	100.0	100.0	100.0	12.4	0.2	11.5	75.9				
			66.8					33.2			
			45.8						53.4	0.3	0.5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이 발생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음.

나.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 간 처리한 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66.8% 차별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중 권고, 조정성립,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 등을 통해 차별이 시정된 비율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고용영역이 35.7%, 교육영역이 74.6%,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72.7%, 사법·행정/참정권 68.6%, 괴롭힘 등 영역이 40.9%였다.

지난 9년간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한 영역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었고 (308건), 이는 전체 인용(권고) 건수(383건)의 80.4%에 해당된다(〈표 13〉 참조).

〈표 13〉 차별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0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승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0,077	4,60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비율(%)	100.0	100.0	66.8				33.2			
				45.7				53.7	0.2	0.4	
고용	건수	628	212	13	-	39	24	136	411 (329)	3	2
	비율(%)	100.0	100.0	35.7				64.2			
				33.8				65.5	0.4	0.3	
교육	건수	996	232	14	-	37	122	59	761 (713)	-	3
	비율(%)	100.0	100.0	74.6				25.4			
				23.2				76.4	0	0.4	
재화· 용역	건수	5,927	3,317	308	5	194	1,906	904	2,591 (1,956)	9	10
	비율(%)	100.0	100.0	72.7				27.3			
				56.1				43.7	0.1	0.1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증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사법· 행정 /참정권	건수	512	250	23	-	4	145	78	261 (176)	-	1
	비율(%)	100.0	100.0	68.6				31.2			
				48.9					51.1	0	0
괴롭힘 등	건수	2,014	597	25	-	81	138	353	1,384 (815)	4	29
	비율(%)	100.0	100.0	40.9				59.1			
				29.7					68.7	0.2	1.4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5.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우리 위원회는 언론 모니터링 및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현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초조사 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개선을 유도하여 즉각적인 구제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장애인 단체로부터 직권조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위원회 설립 이후 장애와 관련한 직권조사는 총 26건이다.

〈표 14〉 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김예원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김예원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I. 들어가는 말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경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 운동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90년대 말, 몇몇 선각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운동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함께 그에 걸맞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2년경 열린네트워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차별금지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의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2003. 4. 15. 마침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이하, ‘장총련’), 그리고 제3그룹 등 장애인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이하, ‘장추련’)의 역사적인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법제정위원회와 투쟁위원회를 쌍두마차로 하여, 장추련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한 지 4년 후, 마침내 2007. 3. 6. 17:30경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같은 해 4. 4.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4. 10.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08. 4. 1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시혜’가 아닌 ‘인권’적 관점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 시행된 것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의 의의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제정 및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의의(意義)에 대해 살펴본다.¹⁾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라는 점이다(당사자주의).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작부터 법률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 의견만 제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련된 장애인 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국회 등과 협상하였다. 그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정당한 주장, 사회 참여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농축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②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이다(연대주의).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추련처럼 범장애계(최종적으로 247개의 전국/지방 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도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연대 조직도 있다. 한국장총이나 장총련과 같은 거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난 몇 년을 지탱해 왔다. 장추련의 힘은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의 공통성과 보편성의 결과물이라 할 장애계 내부 단체들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노동, 교육, 여성, 인권, 종교, 문화 등 수많은 시민단체

1) ‘장애인 법률, 그 비관과 전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엮음, 2010. 12. 31.) 중 박종운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들이 장추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추련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평화 등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며 보다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전조(前兆)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복지의 시혜 대상, 일방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④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인권 운동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지나간 세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외국인, 혼혈인, 성적 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다수자들의 인식을 전화(轉化)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 기준을 법률적으로 제시해 줄 것이다. 대륙법계의 전통 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수많은 차별 행위들을 모두 포섭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차별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와 장애인, 차별, 차별행위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위 뿐만 아니라 각 행정청과 법원의 차별판단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보다 확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 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⑦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각종 법령의 제정 및 정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를 하였고,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법무부(안)도 나왔지만, 제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새 정부 들어 와서는 국내법 검토, 외국 입법사례 연구, TFT 운영 등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차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이고 각론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각종 법령에 잔존하고 있는 차별적 조항들을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⑧ 지금까지는 장애인 운동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법 제정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에 당사자(혹은 수요자) 중심의 법률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그동안 장애인 정책의 핵을 담당해 왔던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인권위와 법무부 등 인권 담당 기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어느 부처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러한 특성이 입법을 지연시킨 사유 중 하나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법 가능성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06년 5월이었다. 장추련의 인권위 접거 농성 과정에서 5. 21.경 인권위에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마치 이를 곧바로 받아주기라도 하듯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가 중재 혹은 조정기관을 자처하고 나서 주었다. 그리하여 차별시정위 주도로 장애인 당사자 측에서는 장추련(주로 법제정위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관련 행정 각 부처와 인권위 실무자들이 마침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2006. 8.

16. 첫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모임의 명칭을 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참여하게 대답하였다. 장추련 측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임이 되기를 원했고, 행정 각 부처는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차별시정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으로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비로소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2. 12.까지 전체 회의 7차례, 소위원회 5차례 등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의 틀은 높아졌으나, 중요한 쟁점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 이때 차별시정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새워 조정안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안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로나 치적으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넘겨서 여당안(대표발의 : 장향숙)으로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 입법의 대들보를 놓았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법률가 등 지원그룹이 결합한 장추련의 법 제정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위의 결단, 청와대의 굳건한 법제정 의지²⁾, 위원장을 비롯하여 담당 비서관과 행정관 등 차별시정위 관계자들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노력, 행정 각 부처 담당 실무자들의 열린 마음과 협력,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회원의원 등 장애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추진력... 이 모든 것 중 하나라도 부족하였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찬 바람 부는 거리에서 나부끼는 깃발, 도심 광장을 울리는 메아리 없는 함성으로만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 이 점에서 당사자(수요자), 관련 부처, 청와대, 국회 등 법 제정에 책임 있는 각 부문들이 법 제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보여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종합 예술, 법제정 운동의 결정판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의 역사인 것이다.

⑨ 법제도가 변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법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 감수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특히, 시혜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이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세미나,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관련자들과 만나야 하고, 각종 학교, 직장 등의 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만나야 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야 한다. 그 밖에 여러 방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고 큰 문제 없이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통령 후보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2008년에 시행되었다.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이, 시행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주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담이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급속하게 모든 것이 변화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 또한 마찬가지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①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여 미흡하다고 평가했던 부분 중, 주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법령이 제정·시행되거나 개정되었다.

② 과거에는 시혜적인 복지 중심의 법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인권적 복지', '복지적 인권'과 같은 복지와 인권이 결합된 용어와 개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복지 없는 인권'이나 '인권 없는 복지'는 생각할 수 없다. '복지'와 '인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개념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인권적 요소가 강화될수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듯이,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법령 간에 간섭, 혼선 혹은 혼합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어떤 개별 법령은 각개 약진(躍進)하고 있는 반면 각종 편의증진법과 같이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들은 정체 혹은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④ 이러한 결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관련 전체 법령 간에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고 서로 간섭하게 되거나 중복되거나, 서로 미루거나, 혼선을 빚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⑤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욕구와 인권의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실제 법령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조치 등을 볼 때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대한 태도와 인식 수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나 권리구제수단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뒷받침 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 인권 옹호적 태도',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³⁾. ⑥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당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래 장추련이 제안했던 법안의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효성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현재까지도 인권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를 모르는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도 존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및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대적, 내용적, 실질적, 인권법적 한계 등을 지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권법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효용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시작 혹은 계속해야 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장애인 인권단체에서도 매년 그래왔겠지만,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당시의 정신과 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당시 필자는 “장추련이 2008. 12. 22. 발표한 ‘장추련의 향후 나아갈 길’이란 글에서 잘 나타나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땀 것일 뿐이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법원, 인권위, 법무부 등이 차별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애인 차별, 정당한 편의, 간접 차별, 직접 차별 등의 개념과 이론적, 철학적 논거를 개발하고 정립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빈틈을 메워줄 법률의 제정,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넘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점 등의 산적한 문제가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인권위의 기구축소와 인력감소는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게 될 것이므로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확충되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를 규제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차별’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교육 및 문화향수에 있어서 필수적인 출판물과 영상물에 대한 정보접근권, 의사소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편의증진법을 신속하게 개정함으로써 정당한 편의가 보다 폭넓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개별 법령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차별적 태도’를 ‘장애인 인권 옹호적 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차별적인지 정당한지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들의 관심과 협력,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옹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성 차별 철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의 지평이 장애까지 확대되었고, 다른 차별 사유에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제정됨으로써 운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됨으로써 더욱 확산되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의를 오늘에 되살릴 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②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숙고(熟考)가 필요하다. ③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법령 체계 전체를 재정립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인권 옹호 및 보장 무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장추련의 법제정위원장이었던 법률가로서,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발제하게 된 것을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II. 주요 개정 사항 작성 경과

3장(III)에서 기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장애인법연구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등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준비하고 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 결합하게 되었다. 여러 법률가 회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과 절, 조문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조문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국내 적용 사례 및 판결례, 외국의 입법례, 개정방향, 개정안 등을 고민하여 작성하였다. 모든 부분을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인권단체와 협의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중요도, 개정 방향 및 개정안 등을 협의 하였다.

따라서, 현재 자료집에 실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은 고정되고 완성된 작품이 아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청 혹은 협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수정 보완되고 진화되어 나가야 하는 운명을 지닌 현재진행형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발제문에 포함된 내용은, ‘주요 개정 사항’인 만큼 나름대로 중요도에 따져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된 내용만 개정의 대상 및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라도 중요도나 내용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오늘 발제를 진행하려고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토론회에서는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개관〉

장	절	조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제02조 장애와 장애인 제03조 정의 제04조 차별행위 제05조 차별판단 제06조 차별금지 제0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0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0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	절	조
제4장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문언상 금지하는 장애 차별이 직접차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해당 문구를 장애 차별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손상중심적’, ‘의료적 모델’, ‘기능적 제한 접근법’에서 ‘인권적’, ‘사회적 모델’,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한 걸음 전진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해야 함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의 개념을 “진화하는 개념(evolutionary concept)”으로 이해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환경 혹은 비장애인들의 태도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봄
-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에 부합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을 인권적·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기능의 손상으로 이해한다면 정의를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현대 장애학이나 장애인법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심적 건강에 있어 제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1. 제한이란 일반적으로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경우 제한이라 말한다. 2.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로부터 위협 받을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심적 건강에 있어 제한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한이란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경우 제한이라 말한다. 2.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로부터 위협 받을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3)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u>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u>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정의) 제1호 : 광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 및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안) 등을 보면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4호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음반, 전기전자 매체를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포괄적인 정의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최종적으로 ‘광고’로만 제한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광고는 최소한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 광고”를 포괄해야 함.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에 따른 <u>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u>를 말한다.</p>

* 제3조(정의) 제3호 : 장애인보조기구 등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⁴⁾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 보조기구를 정의하면서 ‘자동차 기타 기구’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기타 기구’라는 것이 자동차의 기타 기구로 좁게 읽힐 소지가 있고 ‘기구’라는 용어도 좁은 의미를 지니기

- 4) 시행령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때문에, 이를 '자동차, 기타 기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 참고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을 삭제.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기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 제3조(정의) 제5호 : 사용자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p> <p>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예컨대, 4호의 '공공기관') 등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 밖에 공공기관 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6호 : 교육기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교육기관에 사설학원 추가의 필요성

- 장애인의 사설학원 이용과 관련된 불편 및 차별문제 꾸준히 이슈화됨.
 - 국내 사례 : ① 교재마련 및 시각화된 콘텐츠 설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 학원 다니기 어려움. ②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지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학원. ③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수업내용 이해에 어려움 겪음.
- 사설학원에 다니는 대신 온라인강의를 수강하거나 교육방송 시청하는 장애인들 많지만, 웹 접근성 문제, 교재제공의 지연, 교육콘텐츠의 자막 미제공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제3조 제6항의 ‘교육기관’의 정의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관련된 내용 추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세한 보습학원 운영자가 바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하거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예시)

기존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학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10호 : 문화예술활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5)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5)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위 조항에 “여행, 관광, 레저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조항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혹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등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임.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⁶⁾

개정안(예시)

<p>제3조(정의)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12. “관광”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제1호의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의 이용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 및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3조(정의) 제14호 : 복지시설 등

6) 국회 노회찬 의원이 2017. 1. 12.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등 참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제3조 제14호 ‘복지시설 등’의 정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5.30 시행 예정임) 제3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제3조(정의) 제20호 : 괴롭힘 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제3조 제20호, 제4조 제1항, 제32조가 모두 연관이 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직접차별, 제2호에서 간접차별, 제3호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제4호에서 광고를 통한 차별, 제5호에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제6호에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해석상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제4조(차별행위) 제2항 : 정당한 편의

제4조(차별행위)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개념은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즉 물리적 수단만을 가리키고 있어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u>정책·절차·관행</u> 등 인적·물적· <u>비물리적</u>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인권교육 의무화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최근 장애인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면서 장애인인권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차별금지교육이나 장애인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차별금지교육 및 장애인인권교육이 추가되어야 함.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② 동일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근거 조항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상 기관의 조사 협조를 받기 어려웠고, 두 기관의 당해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의 실태조사의 중복 문제를 정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실태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조사 협조를 얻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 주관 기관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제출하도록

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출 요구 자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 장애인 채용, 승진 및 해고 등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장애학생 입학 및 전학 자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음.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1(법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 행	시행령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1(실태조사) ① 법 제8조의1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등 장애 차별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2. 사회영역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 상황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칙, 관행 등의 실태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 이행 실태 6. 장애를 가진 근로자, 학생, 고객, 민원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 경험 및 관련 욕구 7. 이 법의 이행과 관련한 기타 사항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은 표본조사로 하되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이 규정에 대하여 혹자는 위 법조문의 해석상,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적용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위반이 되는 차별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바, 장애 차별과 관련해서 이 두 법은 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법 제9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나아가 다른 법상의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는 이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장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제2장 차별금지

-1. 제1절 고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제1절(고용)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1.1.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내용이 없음.
- 사용자가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쉬운 그림, 쉬운 설명, 의사소통 조력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1.2. 비물리적 편의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 편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반면, 미국 장애인법은 공적인 직위로의 재배치, 직무재편성,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변경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과 같은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있음.
- 그 밖에 외국의 여러 장애차별금지법은 편의 개념에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 편의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정당한 편의 개념에 비 물리적 편의를 의미하는 ‘정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3. 직장보육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 직장 보육에 대한 내용은 장애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여성 조항인 제33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였음.
- 임신, 출산, 양육, 보육 등은 장애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나, 이에 대한 내용이 장애여성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마치 장애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였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직장보육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을 고용 조항에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제2절 교육

-2.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입학지원과 입학 및 전학 관련 내용 추가 (개정안 제14조 제1항)

- 차별금지 조항인 제13조 제1항에는 장애인의 입학 및 전학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인 제14조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 의무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 개정방향 : 제14조 제1항에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전학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입학지원 및 입학하거나,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거나,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2.2. 교내 이동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통학과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통학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통학차량이나 통학비 지원 등 의무는 부과하지 아니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5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 편의를 위한 내용이 제한적임.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는 이동을 위하여 이동용 보장구 외에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은 이동을 위하여 이동용 보장구 외에도 점자블록, 점자안내표지판, 음성안내 시스템 등의 시설과 설비가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이 지하 1층, 지상 3~4층으로 된 대학건물을 이용함에 주출입구에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외국어교육센터, 전공실험실습실, 학과학회실 등이 위치한 2층 이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학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시설의 마련을 권고하였음(2012. 6. 13.10진정0175100, 10진정0180600, 10진정0181100)
- 법원은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와 관련하여,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는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300만 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바 있음 (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 미국장애인법(ADA) 시행규칙(Regulations) 28 C.F.R. §36.304에서는 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 내 이동 및 접근과 관련된 배리어(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기관은 불편을 제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커뮤니케이션상 불편을 포함하는 건축적 불편을 제거하여야 함을 명시. 경사로 설치, 각종 물건 및 가구의 재배치,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 표기, 출입문 넓히기, 사용하기 쉬운 문 손잡이 설치 등 다양한 불편 제거의 예를 제시하고 있음.
- 개정방향
 - 통학과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통학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를 예시규정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편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u>통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량 제공,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 교통편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u> 1의2. <u>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u>

-2.3.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명시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4호의2)

-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과정에서 차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적 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미국장애인법(ADA) 시행규칙(Regulations) 28 C.F.R. §36.303(c)(1)에서는 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 등의 의사소통 관련 규정 명시. 발달장애인도 이 규정에 의하여 의사소통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교육기관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장애가 있는 동반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은 적절한 보조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및 서비스의 종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관련 의사소통의 특징·길이와 복잡한 정도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 및 서비스를 결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요청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조기구 및 서비스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필요한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 개정방향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
 - 교육책임자 등의 편의제공의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의 제공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의 제공, 의사소통 보조인력의 제공 등 의사소통지원 관련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예: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 이는 제4호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별도로 명시한 것처럼 별개의 호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4의2.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자료,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의사소통 보조인력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 또는 지원의 제공

-2.4. 교육에 필요한 수어 통역의 확대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4호)

- 학교에서는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외국어 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이 예외가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조항에서 수어통역을 “한국수어통역”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법령에 쓰인 ‘수화통역’이 일괄적으로 ‘한국수어통역’으로 개정됨. 이 과정에서 각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않음. ‘수어’는 언어별로 다르므로 법령에서 ‘한국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문체부 국어정책과 확인).
- ‘수어’는 ‘한국수어’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한국수어통역’을 ‘수어통역’으로 개정할 경우, 외국어 학습 측면에서의 교육기회는 물론 향후 수어통역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교육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어통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한국농아인협회 의견).
- ‘한국수어통역’을 ‘수어통역’으로 개정하면, 교육에 있어 한국어는 물론 알파벳지화, 나아가 외국어까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4.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4.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어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2.5. 교육방법 및 시험(평가)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5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로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
-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과 교사 사이에 평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개 장애학생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함. 예를 들어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하여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습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행평가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적절한 교육방법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이 많은데,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한국농아인협회)
- 시험(평가)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사례는 국내에서 꾸준히 이슈화됨
- 국내 사례 : ① 수험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② 손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뇌성마비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 겪음. ③ 시각장애인은 수능시험 수학 과목에서 스크린리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만 제공. 점자를 잘 읽지 못하는 중도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음. ④ 각종 영어시험 및 자격증 시험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스크린리더 지원이 되지 않거나 장애인 수험생이 직접 스크린리더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스크린리더 지원 관련 어려움 많음.
- 공무원시험, 대학입시, 토익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장애인차별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이에 장애단체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은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차별금지(편의제공)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교육, 고용 등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 다양한 평가과정에 반영 가능한 전반적인 시험(평가)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조항 필요”(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미국 사례 - 진단 및 평가 시 피검자가 종이, 연필 또는 계산기 등의 보조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가 실시되는 물리적 위치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가령 검사는 탁자가 아닌 바닥에서 또는 검사실이 아닌 놀이방에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검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부모나 교사와 같이 피검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⁷⁾

7) McLoughlin, J. A., & Lewis, R. B. (2005) Assess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6th ed.). Upper

- 제14조에 명시된 교육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장애인법(ADA) 42 U.S.C. §12189에서는 “시험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 및 방법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장소 및 방법을 통해 시험 및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
 - ① 뇌성마비로 인해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이나 과제 완성에 부과되는 시간제한을 연장하거나 제거해 준다. 또한, 신체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대신 그들의 반응을 오디오로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⁸⁾
 - ② 청각장애 학생이 듣기 평가 시 화자의 입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지 않은 경우에 이 학생들의 진정한 수준을 알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을 화자의 입술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⁹⁾
 - ③ 시각장애를 지닌 장애학생에게 시험을 볼 때 확대시험지나 점자도구를 제공한다.¹⁰⁾
- 개정방향 :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또는 시행령 제8조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 및 방법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시험제공”과 관련된 규정 보완, 추가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 ①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 ①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접근 가능한 장소, 방법을 통한 평가방법의 제공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교육에서의 장애차별예방매뉴얼 57쪽에서 재인용

8)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 17. Assessment.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57쪽에서 재인용

9)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 17. Assessment.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58쪽에서 재인용

10)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 17.5.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58쪽에서 재인용

-3.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3.1.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영역에 관한 개정

- 현행법 제3절에서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영역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음. 동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범위는 제16조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19조의 '이동 및 교통수단', 제24조의 '문화·예술활동', 제25조의 '체육활동'뿐이고, 통상적인 서비스업의 범주들, 예를 들면 숙박업, 요식업, 판매업, 오락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회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법원 및 국가인권위가 제3절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제공자들도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 해석하고는 있지만 그 영역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심의한 바 없어, 그에 대한 불명확성은 여전히 존재함.
- 최근의 법 개정안에서 관광활동을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에 포함시키고 이 영역에서 현행 법상의 차별을 금지한 것은 그러한 불명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기의 맥락에서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당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특정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은 더 이상 불필요해질 것임.
- 참고로, 우리 현행법과 달리 미국장애인법은 우리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에 대략적으로 해당하는 '공중시설'(public accommodation)의 범위를 12개 범주로 열거하고 있고, 영국의 1995년 장애차별법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간략히 정의한 후 그 8개 범주를 예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의 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은 법 제3조(정의)에서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해 간략히 정의하면서, 제3절에서 명시된 5개의 영역을 포함하여 추가로 3~4개의 영역을 더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그 영역을 예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미국처럼 열거 방식을 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의 추후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신설></p> <p>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현행과 같음) 8.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이라 함은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자나 장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동 및 교통수단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관련 서비스의 제공, 체육활동 관련 서비스의 제공, 상품의 도소매, 숙박·오락·요식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단,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9. “정보”라</p>

-3.2.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 유형에 관한 개정

- 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해당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 제15조제1항은 그 문언에 ‘장애를 이유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임. 제15조제2항은 특별히 어떤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구는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을 포괄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음.
- 그간 국가인권위 및 법원은 제15조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 현행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 왔지만,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문언이 직접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 등과 맞물려 그러한 적극적 해석의 근거가 취약한 것은 사실임.
- 따라서 제15조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이 재화·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직접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제16조 및 제17조도 차체에 현행법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모든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의 부과에 관한 개정

- 모든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의 모든 제공자에 대해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3절을 적극 해석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법개정을 하는 것은 제3절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조항과 이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의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 기본적으로 현행법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와 편의 제공 내역을 규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 이를 일일이 적시하고 나아가서 그 제공 의무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런데 모든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영역에서의 모든 제공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편의제공 의무자의 범위의 단계적 적용 규정의 취지와 충돌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제24조 및 제25조와 이와 관련한 시행령 조항은 규모별로 또는 유형별로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셋으로 묶은 다음 각 묶음별로 연차적(2010년,

2012년 및 2015년)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이 규정은 해당 묶음에 포함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그 묶음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나 유형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한 것임. 따라서 이들 면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나 해석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관한 조항과 충돌함.

- 이와 같은 충돌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조항이 없는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 제공 영역은 물론이고 아예 제3절이 명시도 하지 않은 다른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임. 비록 그간 국가인권위 및 법원이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을 적극 해석해 왔다고 하더라도,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 등의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이 자신들에 대해 문화·예술·체육활동 영역에서처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법이 자신들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해석이 부적절하다면, 결국 그들은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도 부적절함.
- 이러한 문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세 목욕업자 등에게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법 시행과 동시에 부과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 개정은 사실상 없음. 다만, 2015.년 4. 11.부로 재화 및 용역 제공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이 완료된 것을 이제 그간 그 의무를 면제받은 작은 규모나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의무를 질 단계가 되었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간의 국가인권위 및 법원의 적극 해석과 조화되게 이들에게도 제3조의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시점부터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설득력을 강화하려면 당해 모순을 야기하는 단계적 적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규모가 작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롭게 부과된다고 여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할 수 있겠으나, 편의제공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차별로 보지 않는 차별예외 조항이라는 안전판이 있음을 주지시키면 될 것임.

- 한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조항은, 이를 개정했을 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여 일단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유형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제안함. 일단 시행령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의 유형을 각호로 예시함. 이때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에 열거된 사업자 유형을 나열함.
 -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가 예시로 임하도록 동 조항도 개정하고, 차제에 기존의 정당한 편의 목록 중에 정당한 편의가 아닌 것들은 삭제함.
 - 체육활동의 경우, 모법에 '단계적 적용' 조항은 없으나, 시행령에는 있는바, 이를 개정함.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체육사업자 또는 체육시설의 유형을 각호로 예시함.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가 예시로 임하도록 동 조항도 개정하고, 차제에 기존의 정당한 편의 목록 중에 정당한 편의가 아닌 것들은 삭제함. 정당한 편의를 열거할 때 [별표 5]의 편의시설들도 포함시킴.

-3.4. 시설물 접근·이용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¹¹⁾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대상과 적용범위는 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중축·개축하는 시설물로 명시하여 '면적'과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면적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되어 예외인정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한편,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예외를 인

11)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사단법인 두루 著) 참조.

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공중이용시설에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발생.

- 참고로,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은 신·개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법의 가이드라인(Accessibility Guideline)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곤란 없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readily achievable)방식의 물리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건물의 건축연도나 면적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들에 비해 “상당한 불리한 지위(substantial disadvantage)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23개의 연방법은 건물 규모에는 관계없으나, “배리어프리(barrier-free)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보수가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함)된 경우에만” 적용함.
- 일본은 “일정 건축연도 및 규모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에만”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무를 부과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범위 밖에 있는 시설에는 접근권 보장 노력을 요구하고, 몇몇 도에서 자체적으로 법률보다 엄격한 의무부과 규정을 두거나, 접근권 보장을 권장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있음.
-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되, 2009. 4. 11.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정당한 편의 내용 및 설치기준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음.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안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 2009. 4. 11.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시설주는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시행령 제11조를 수정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는 편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 제18조를 개정하고, 시행령 제11조는 삭제하기로 함. 다만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12조에서 그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므로 법 개정안에서 이를 고려함.
- 시행령 제12조에 정당한 편의 및 시설물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별표2는 시설물 설치기준인 물적 편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배제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은 해석상 불분명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임을 명시하고, 위 별표2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p> <p>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작용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p> <p>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로 한다. 다만 2009. 4. 11.이전에 신축·증축·개축·설치(실내건축에 의한 설치를 포함함)한 시설물에 관해서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⑤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장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 제4항 단서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u>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u>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u>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시설물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u>

-3.5.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정

- 미국은 2010년 8월 21세기통신비디오접근성법(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을 발효하였음. 이 법은 웹접근성이 아니라 통신 및 비디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서 특히 제101조에서 고급통신(“advanced communications”)을 VoIP, electronic messaging, video conferencing services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04조는 합리적인 노력과 비용으로 달성가능한 범위 내에서(as achievable with reasonable effort or expense) ㉠ 고급통신기기가 장애인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거나 장애인이 보통 사용하는 기구와 호환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접속이 장애인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 현행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웹사이트 이외의 소프트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차별행위에 대한 해석 규정이 불분명해짐.
 - 법 제20조제1항은 ‘개인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21조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정보제공자의 필요한 수단 제공 의무를 ‘웹사이트’만 규정하여 실제 의무화된 전자정보의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외의 소프트웨어(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을 포괄하는 개념) 문제로 인한 정보접근권에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근거조항이 부재함. 특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이에,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참고로, 개정안에서 ‘웹사이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병기한 이유는 공식 명칭인 ‘소프트웨어’가 지나치게 해석의 범위가 넓은 용어인 점, 미래창조과학부고시(2016. 10. 국가표준)에서 채택한 용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점을 감안한 것임.
 - 동 국가표준에서 의미하는 ‘모바일 기기’란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및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를 의미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란 모바일 플랫폼 개발언어로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의미함.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u>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u> 등

-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등은 동조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의 각 수단에 대하여 에 의하여 장애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동조제3항) 이내에 제공할 의무를 규정함.
 -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지원은 즉시 혹은 지체없이 제공되는 것이 유의미한 상황이 대부분임에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규정은 정당한 편의의 즉시제공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함.
 - 이에,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현행	개정안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u>지체없이</u> 제공하여야 한다.

-4.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잠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4.1. 제3항 :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대상 확대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1) 허가, 신고, 인가 등 절차와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절차 전체로 확대할 필요 있음. 적어도 (1)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나 신고절차로 명시하고 행정지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안
<p>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p>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4.2. 제4, 5항 :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신청권, 공공기관의 적극적 확인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시내용 확장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그에 따라 필요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거나 당해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 5항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서적의 제작 및 제공을 들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 있음

현행	개정안
<p>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조인력의 제공,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식의 제공,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장애인은 공공기관 등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그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확인하여야 한다.</p>

-4.3. 제6항 : 사법기관의 특례

(1) 의무 주체 확대

제6항에서는 장애 여부 확인 및 조력에 대한 고지를 사법기관에만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예: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수용 등)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으로 의무의 주체 확대

현행	개정안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2) 대상의 확대 :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절차 일반으로

제6항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사사법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절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안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4. 주체의 명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제2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공기관 “등”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언급이 없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등”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4.5.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신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재난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재난 관련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 찾아보기 어려움

국가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맞춘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장애인이 재난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큼. 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택격리 조치가 내려져서 그 장애인이 결국 메르스 병동에 입원하게 됨.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 신설 필요.

〈제27조 참정권〉

-4.6. 제27조 선거 참여 보장을 위한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관련 규정 신설

-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은 가장 기본적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여전히 문제되는 곳들이 많음. 예: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된 지하 투표소,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전동휠체어로 투표소

접근 불가, 수동휠체어 접근 불가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기표대 등.

- UN 장애인권리 협약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를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 신설 필요.

-4.7. 선거방송 및 선거 홍보물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추가

- 선거방송, 선거 관련 웹사이트, 선거 홍보물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해서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며,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
- UN 장애인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장애특성에 따른 정보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 4조(일반의무)는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보조 및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 제9조(접근성)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을 규정. 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서는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 적절하고 추가비용 없이 제공할 것을 권고.
- 선거방송, 선거 관련 웹사이트, 선거 홍보물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명시 필요.
- 시행령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예: 책자형 공보물과 같은 내용을 점자 및 음성공보물(점자를 읽지 못하는 다수의 시각장애인 고려)로 제작하도록 함. 후보자 홈페이지에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선거 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삽입. 발달장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 및 투표 과정 설명과 관련한 자료제작 및 보급 등

-5.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제5절(모·부성권, 성 등)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5.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확대(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제4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을 마련할 의무주체로 규정하지 않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임.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무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제30조(가족·가정,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는 가정, 가족과 복지시설을 나누어서 구성하고, 특히 탈시설 지원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복지시설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건강권의 개념, 의료정보 이외에 장비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권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으나 장애인건강권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추후 논의가 필요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괴롭힘 내용(특히 혐오)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 총칙에 규정할 필요성,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제3장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1. 수범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인으로 확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영역에서의 사용자, 교육 영역에

서의 교육기관을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밖에 재화·용역 제공자, 공공기관 등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여성 조항의 수범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공통된 주제는 장애여성 조항이 아닌 일반조항으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제2항·제3항)

-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보육 등은 모든 장애인의 문제이나, 이에 대한 내용이 장애여성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마치 장애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있음.
-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서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정 성역할을 강조하는 것 또한 성평등에 반한다고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 제2항의 내용은 모·부성권을 규정한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직장보육에 관한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규정한 제33조 제3항 각호는 제11조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다중차별, 장애여성 역량강화 규정 필요(신설)

-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사유로 인하여 차별을 겪고 있으며,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 장애남성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됨.
- 장애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애여성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장애여성이 마주하는 다중차별, 장애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여성 조항에 다중차별금지,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므로 총칙인 제1장으로 옮겨 규정되는 것이 필요함(이는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도 마찬가지임).

-4.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차별금지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정신적 장애인의 성장한 권리 의식을 반영하여 정신적 장애인이 겪는 특수한 차별과 그 금지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1. 법무부 시정명령 요건 완화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필요한 때에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발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시정명령의 요건 중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

현행	개정안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2. 국가 및 지자체 산하 장애인차별 담당관 설치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장차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

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이 없어 실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산하에 장애인차별 담당관을 두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2(장애인차별 담당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차별 담당관을 둔다. ② 장애인차별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행 업무 지원 및 점검 2. 장애인 차별 관련 실태조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정책연구 6.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애인차별 담당관은 장애인차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각 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④ 장애인차별 담당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5.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1. 단체소송 제도 도입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차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가 대신하여 법원에 개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p>제48조의2(단체소송의 대상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원에 장애인 차별을 구제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고,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50명 이상일 것 다. 주무관청 허가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한국장애인개발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인 이상의 장애인으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고,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법원의 관할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관할이 행정법원인지 민사법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등) ④ 이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으로 한다.

6. 제6장 벌칙

-1. 차별행위에 따른 벌칙 규정

가.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이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에 관해 현행 장차법은 차별의 고의성·지속성 및 반복성·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장차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악의성 판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데에 있어 ‘전부’ 부분을 삭제

현행	개정안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u>처한다</u>.</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IV. 마치는 말

이상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 발제문은 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개별 법률 단위의 약진(躍進)을 도모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 체계의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당시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인권법 - 복지법의 2개 체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기본법 - 인권법 - 복지법의 3개 체계로 분류 및 재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해당 체계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법 제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나치게 간단한 개념 중심으로 법조문이 제정되고 해석상의 논란을 남기며 정부 주도의 시행령으로 인해 법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후퇴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법 현실을 반영한 수요자(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단체) 중심의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의 전통을 도입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법 조문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세 사항을 너무 쉽게 시행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한 사항 등은 아예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관련 정부 부처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빠질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향후에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그동안 인권법으로서 한 축을 감당해 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역사적인 정신과 의미가 되살아나는 10주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야기

1)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

오랜시간 장애인에게 차별은 일상이었다.

명절이나 가족의 행사가 있는 날 조용히 숨죽이며 구석방에 숨어있어야 했고, 그렇게 20년 30년 씩 집안에서 생활하며 세상밖은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다. 학교는 장애인에게 너무 먼 곳이었으며, 장애인을 받아주는 일터를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였다. 누군가는 쉽게 건너는 육교와 도로의 높은 턱은 장애인에게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막아섰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시설로 보내져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나오는 길이 없는 곳이었다. 시설밖 사람들이 그곳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이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시설운영자는 불쌍한 장애인을 들먹이며 돈벌이를 했다. 그 사이 오히려 장애인의 삶은 험벗어가고 있었다. 폭행과 폭언에 신음해도 그러다 생명을 잃게되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과 죽음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렇게 지역사회안에서 시설안에서 어느곳에 있던 차별의 대상이 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장애인의 삶에 대해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해 장애인 인권단체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상담건수가 1천건

을 넘어섰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 주요차별사례>¹⁾

- 장애를 이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원직복직안됨
- 수화 통역자가 없어 성폭력 당한 청각장애여성이 간통죄로 몰려
-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장애를 이유로 불편할 것 같다며 혼자서 1층에서 일하도록 한 경우
- 시각장애인임을 알면서 직원 채용 면접시, 유인물을 읽어보라는 면접관
- 친척 형이 동생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도주하여 빗더미에 앉게 된 지적장애인
- 신변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
-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밥과 빨래 등 집안일을 온통 맡아서 하는 여성
-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는 아예 보내지 않는 부모와 형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영국에 연수를 다녀온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 4월 15일 장애유형과 활동의 범위, 단체의 규모,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차이를 모두 배제한 가운데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전 장애계 단체 58개가 참여하여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가 출범하였다. 제정추진연대는 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형태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길거리에서 157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제정까지 출범시 58개였던 제정추진연대 참가 단체는 2007년 3월 전국 297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법안 제정촉구를 위해 2005년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과 부산의 장애인 활동가 13명이 삭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① 51p 내용 중 발췌

발식을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렇게 2001년 초기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은 6년여의 긴 시간을 보낸 후 2007년 3월 6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주요과정〉

- 법안만들기
 - ① 장애인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다
30~40명의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이 매주 만나 라이프 스토리 형식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장애인당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률가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정리하고 기본 골격을 구성
 - ②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9차례 연속공개토론회 진행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당사자의 차별경험을 모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매주 1회씩 분과별 논의를 통해 초안 작성
 - ③ 2004년 5월 대규모 토론회 개최
100명이 1박2일간 참여 작성된 초안 검토
 - ④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순회 공청회 진행
지역별 의견 수렴을 위해 8개 주요도시 순회
 - ⑤ 2004년 1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 개최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자문토론회를 거쳐 법안 마련
- 입법발의 과정
 - ① 2005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홍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촛불문화제, 결의대회, 백만인서명운동 전개
 - ②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접거농성 진행
 - ③ 2005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국회 발의
각 정당에 법안 발의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 민주노동당의 답변을 받고 간담회와 토론회 진행후 발의 결정
 - ④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결성
문화제 개최,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를 위한 전동휠체어 거리행진, 대표자 9인 삭발식, 지역별 촛불집회와 1인시위 등의 활동으로 법제정 촉구
 - ⑤ 연대단체 82개 단체로 확대
 - ⑥ 국가인권위원회 접거농성을 통해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⑦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대통령 자문 차별시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정부 12개 부처와 함께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논의 진행

- ⑧ 각 당의 법안 발의
노회찬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으로 2006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장향숙의원 대표 발의(총 54명 의원 공동발의 서명), 같은 날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발의(총 38명 의원 공동발의 서명)
- 국회통과 및 시행과정
- ① 국회발의 3가지 법안 의견조정
정당별 발의안 3가지에 대한 의견조정작업 추진, 쟁점사안인 ‘장애개념’, ‘시정명령권 명시’, ‘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 내용 결정.
 - ② 2007년 3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③ 2007년 4월 10일 대통령 공개 서명식 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포
 - ④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배제한 정부 단독의 시행령 마련 논의를 저지하고,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령안 완성.
 - 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각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⑥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 우리가 걸어온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을 맞이하였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우리 생활속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으로 2009년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를 개설하였다. 8년째 운영되는 상담전화를 통해 한해 300여건 총 2400여건의 장애인차별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사례들의 대응을 통해 작게는 개인의 삶을 크게는 사회제도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조력 지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 인지와 표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때는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가해자가 되었을때는 가해사실이 확대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정당 시부터 의사소통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도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의 조항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1년 방화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된 여성지적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법원에 처음으로 요청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의사소통 조력 지원 사건개요〉²⁾

- 2011. 4. 11. 김00씨 방화사건 건 관련: 종로경찰서 강력2팀장, 유치소 김씨 접견
- **2011. 4. 15. 담당검사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공문 발송함**
- 2011. 4. 19. ‘장애여성, 거리에서의 노숙생활 20년’ 성명서 뿌림
- **2011. 4. 22. 담당검사와 통화: 구속연장확인(정신 감정상태 확인 위함), 피의자 심문 조사시 ‘신뢰관계 동석자 배치’를 하겠다는 약속받아냄**
- 2011. 6. 14. 차혜령 변호사와 대책회의: 인덕원 서울구치소
- **2011. 6. 28. 김00씨 1차 공판: 재판부에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배치’를 요청함 // 재판부는 ‘장차법제26조제6항 정당한 편의라는 점을 근거로 확인하였음**
- **2011. 7. 6. 김00씨 2차 공판: 장추련이 ‘한국 형사소송’ 최초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역할을 지원함**
- 2011. 8. 2. 김00씨 대책회의 및 회의목적: 공판 진행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장추련 의견 서제출 및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김씨 향후 지원방안 논의//회의 참여자: 차혜령변호사, 장추련 사무국, 배복주(장애여성공감), 김영희(노들), 박문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비마이너 기자
- 2011. 8. 10. 김00씨 3차 공판: 검찰 측 증인 심문(00슈퍼 주인부부 증언, 119소방관) 검찰 측 ‘김00씨가 무고한 비장애인 슈퍼에 방화를 한 것으로’ 사건초점을 부각시키려고 함

2)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01p)

- 2011. 9. 2. 김00씨 4차 공판: 검찰 측 증인 심문(경찰관, 노점상) 출석하지 않음. - 2011. 9. 21. 김00씨 5차 공판: 검사가 교체됨/ 이번 검사는 00슈퍼에 찍힌 사건과 다른 화재현장에 찍힌 사건을 판별하고자 함/ 또한 김00씨의 정신감정을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한 정신과 의사>에게 재요청함
- 2011. 10. 5. 김00씨 6차 공판: 검찰 측 증인(경찰관, 노점상)출석함. 두 사람 모두 화재현장에 있지 않았고, 김00씨를 화재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음/ 00슈퍼 화재 이후,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로부터 김00 씨일 거라는 추측형 말을 들었다고 함
- 2011. 11. 18. 7차공판, 재판부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없는 상황)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분노조절 등에 대한 훈련이 부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일부 책임은 사회와 가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현재 상황: 검사측은 1건의 방화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우리측도 재판부가 <분노조 절훈련 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치료보호 감호처분>관련하여 항소함.

이후 법안에만 명시되어 활용되지 않던 의사소통조력제도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점차 적용되어나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절차에서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차별상담전화의 의사소통조력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월 3회 이상 경찰서와 법원 등에서 의사소통을 조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 역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직접 상담전화로 연락을 해오거나, 경찰에게 의사소통조력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 체육시설에서의 인적지원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2013년 시각장애인 여성이 00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요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보조인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당시 해당 스포츠센터는 보호자동반시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장애인당사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설 이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체육시설등은 프로그램 참여를 표면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 참여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장애인차별 시정 구제청구소

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11월 피고측이 원고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께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종결되었다.

〈해당재판의 조정합의 내용〉

- a.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프로그램제공 - 피고측은 원고가 차별받았던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국한, 전 프로그램 참여시 보조인력제공의 어려움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주장. 원고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보조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 b.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점자자료제공 - 피고측은, 웹사이트 홈페이지 비용이 7천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함(제공시기: 2014년 12월), 점자자료는 향후 시각장애인과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서 제작, 배포하는 방식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조정함(제작완료: 2014년 6월 30일까지)
 - c. 요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필요한 보조인력제공. 원고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보조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 ** 조정내용에는 도시관리공단이 미이행시, ‘피고들은 (가)항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재판장이 얘기했고, 원고측은 피고측이 미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킴.

위 소송의 결과 해당 체육시설은 보조인력 배치 및 편의시설설치, 그리고 장애인에 정보제공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작하였다.

이후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유사한 사건 발생시, 해당 조정판결을 판례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사례를 진행하고 있다.

예) 2015년 경기도00시에서 위탁하는 체육시설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 당시 해당 판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제시를 통해 탈의실과 샤워실의 구조변경공사를 진행하고, 미리 시간 통보시 보조인력을 배치 체계마련

3) 시험에서의 장애인차별 대응 및 변화

① 수험능력시험에서의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요구

2013년 2년후 수험능력시험 응시에정인 전맹시각장애학생들이 수능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로 제공되고 있는 점자문제지와 녹음테이프 및 1.7배의 시험시간 연장 제공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생들은 어린시절부터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모의고사 및 수능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2015년 모의고사에서부터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② 공무원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확대

2015년 1급 뇌병변장애인 윤00씨는 9급 세무회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개별 고사실과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전까지의 시험과정에서 대필지원은 마지막 답안지 체크 과정에서만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계산과정을 모두 암산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계산과정에서의 메모대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대필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간연장과 답안지 체크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절의 입장을 제시했으며, 차별상담전화는 당사자와 논의하여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계산과정대필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처음으로 공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이라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공무원시험에서도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하였고, 위의 사례를 예시로 이후 시험에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이후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과 별도고사실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4) 한눈시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6년까지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단안시각장애인의 경우 양안시력을 측정하는 1종면허를 취득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각종 사고로 한쪽눈의 시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운전이 기능함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년 12월 30일 국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1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되었다.

3. 우리가 가지 못한 길, 하지 못한 일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보내며, 우리는 그래도 크고 작게 많은 것들을 바꾸어왔다.

차별조항이 약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의 사건들에 대응하면서 법과 제도과 사회를 우리는 하나씩 차근차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10년을 돌아볼 때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 변화시켜보고자 끊임없이 고민해왔지만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들, 10년이라는 시간속에서도 바꿀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

1) 차별 시정기구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 운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결국 발의 과정에서 장애인차별시정기능은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선에서 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시정기구를 일원화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차별을 당했을 때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시정기구는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법 제정당시 우려는 현재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①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서의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현재 거의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2010년 뇌변변장애인 남성의 질병에 의한 직권면직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2012년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끝으로 5년이 될 동안 단 한건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법 제정당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청했던 것은 이렇게 이원화 될 경우 시정권고가 시정명령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결국 시정조치가 강제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시정명령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율의 저하에 있다. 실제로 시정권고 건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시정명령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한가지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섹션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있어서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업무 주요내용〉³⁾

-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내용 통보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이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심의
- 심의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②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다. 제정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규정한 것은 장애와 관련한 문제는 인권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인용(권고)률은 10%선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율의 저하는 결국 위에서 언급했던 시정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차별구제에 있어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권고율의 저하는 현재 권고를 결정하는 인권위원의 구성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구성원중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와 관련한 활동을 했던 사람

3)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중

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은 법조계 출신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로 많은 사건들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판단은 결국 장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인권적인 관점을 담아내기 어려우며 결국 많은 사건이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채 기각 또는 각하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결정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구성원중에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치적인 입장만을 담아서 결정되는 위원으로는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시정을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상법 732조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상법 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초기부터 장애인을 보험가입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계속 폐지를 요청해왔다. 732조 안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라는 표현으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반복되게 보험을 거절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계속되는 장애계의 요구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법무부는 폐지가 아닌 개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개정의 내용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의사능력을 결정하는 권한은 역시 보험회사에 주고 있어 말만 바꾸었을뿐 내용은 변화가 없는 제자리걸음이 되었다.

4. 우리가 그래서 가야할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당시 그동안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법체계를 바꾸어보고자 만들어졌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가져가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장 큰 기조로 삼았던 것은 결국 차별에 문제는 장애인당사자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것이 복지와 시혜를 이야기하는 법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차별받을 때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회에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법의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10년을 맞이하며 법의 모습을 바꾸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결국 그 모습안에 내용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과 잘 연결될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작은 장애인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역시 장애인이 앞장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의 힘과 의지로 법이 우리 삶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며 하는 바람이다.

제정 20년 쯤이 되는 해에는 장애인차별이 없어서 고민하는 세상이 되었으며 좋겠다. 언젠가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차별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그러한 세상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자,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4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부산)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경남)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사)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 호 상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2-22 조례 제 47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개원소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 후 매년
• 연례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 성과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3년 4월 3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4852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위원회 구성은 물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음.

서병수의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변경(2016년 11월)


공약실천계획변경(2016년 11월) 공약실천계획변경(2015년 10월)

>장애인복지과

수정 공약 ↓

○ (5-23) 장애인 인권과 자립 보장
-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명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 16년—17년)

○ 장애인 권익지원 법인 관리(설립허가, 정관변경, 행사지원 등) ○ 장애인 단체(시각, 언어, 청각, 지체, 뇌병변, 여성 장애인 등) 관리 및 행사지원 ○ 장애인 복지관 운영 ○ 장애인복지관 특육탕 운영 ○ 장애인 인권센터(권익옹호기관) 설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보급사업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소개

사업내용

장애인과 인권

사업소개

연간사업계획

인권상담·조사·구제

인권교육

협력기관

권익옹호기관의 사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가족 상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장애인 인권센터

※**P&A(Protection and Advocacy)** :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체계로,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 받고, 피해당사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과 가해자 고발, 소송 등 법률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임. 나아가 공익소송이나 공적 보고서 발행, 입법운동과 같은 법제개선 차원의 활동을 할 수도 있음.

조례 이행을 위한 과제

- (1)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장애인 차별』 사무영역의 정리가 필요.
- (2) 인권 전담기구 운영은 필수(유사업무 통폐합이나 인권 사무를 복지위원회서 논의 구조를 갖는 것은 잘못된 발상).
- (3) 조례제정에 관여한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참여, 연대가 더욱 필요.
- (4)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와의 다원적 네트워크 강화. 半官半民 Governance 정신이 필요.

I WILL ALWAYS STAY WITH YOU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경남)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뿐만 아니라,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비준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대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법률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삼아 여러 가지 하위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차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장차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규정 또한 차별의 금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소극적 평등과 최소한의 권리보장에 국한되는 법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2010년도부터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한 조례(이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7년 3월말까지 제정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치단체 15곳, 기초자치단체 85곳**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총 17곳 중에서도 아직까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 이는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이다.

표 1.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3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3.02
4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5.03

구분	지역	조례명	제정일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6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8.05
7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8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9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6
10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03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10
12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30
13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08
14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2.31
15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11.03
16	충청북도	없음	
17	경상남도	없음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2017년 3월 검색) www.moleg.go.kr

2.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된 주요한 두 가지 문제점

1) 지자체의 책임사항에 따른 실효성 부분

각 지역 조례별로 지자체의 책임사항을 살펴보면, 장차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의무¹⁾를 포함하여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책임(부산, 충남),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책임(서울, 울산),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추진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할 책임(전남, 광주, 대구, 제주, 인천, 전북),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공개할 책임(전남, 대구, 전북) 등을 추가한 지자체도 있었다.

- 1) 장차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조항이나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어떤 사항들을 이행하고자 하는지를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항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벌칙이나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향후 조치 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특히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의 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장차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떠한 방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진 조례들이 많다. 그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보면,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시하지 않거나(전남, 광주, 대구, 제주, 대전, 강원, 인천, 경기, 세종, 충남, 경북, 울산) 실태조사는 시행하되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광주, 제주, 강원, 세종, 울산), 차별대응을 담당할 인권센터의 설치규정이 없는 것 등이 있다(세종, 울산).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임이 이미 예상되는 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강원, 세종, 충남, 울산).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지자체 책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 조치와 개선방안 및 미이행 시의 벌칙 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2) 인권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독립성의 담보 부분

매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의해 이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권침해를 예방할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를 신설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규정된 인권센터와의 중복사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조례의 보완을 통해 통합 혹은 협조체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명시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대다수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한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규정이 생략되어 있다. 바로 독립성에 관한 담보규정이다. 물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체의 독립성이 아니라 업무상의 독립성에 관한 기준이어서 매우 모호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때,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자체가 몇 곳 있을 뿐이다(대전, 강원, 부산, 충남, 경북). 현재까지는 이나마도 획기적인 제한 조치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의 제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2.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사항”

구분	지역	센터설치	접근조사권	운영방식	위탁 시 제한사항
1	전남	의무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2	서울	임의설치	임의	민간전문단체 위탁 가능	×
3	광주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4	대구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5	제주	임의설치	임의	민간단체 위탁 가능	×
6	대전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①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에서 제외. ②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7	강원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①(6-①과 동일) ②3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8	인천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9	경기	의무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10	부산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6과 동일)
11	세종	×	×	×	×
12	충남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6과 동일)
13	전북	의무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14	경북	임의설치	부여	민간단체 위탁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에서 제외.
15	울산	×	×	×	×

필자가 2009년부터 장애인 차별상담을 통해 차별에 대응하는 옹호활동을 해 오면서 복지서비스 영역 중 가장 많은 상담의뢰가 접수된 부문을 꼽자면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 외에도 편의시설의 법규위반 설치 및 미설치에 관한 문제, 각종 복지서비스의 절차에 관한 문제, 장애인이 동지원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택시 등)의 운행문제 및 기사의 차별과 불친절 문제, 활동보조서비스의 차별적 규제 및 활동보조인의 차별과 불친절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의 점검과 허가권한을 대리하는 기관,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 등 지자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사업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한 인권센터나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권센터이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건 간에 이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앞서 언급된 기관에서의 문제 발생 시 그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인권센터 혹은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시점인 지금, 권익옹호기관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인권센터 또한 소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라 여겨진다. 적어도 대전, 강원, 부산, 충남, 경북의 조례에서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체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위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정도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여전히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광역지자체는 충청북도와 경상남도, 2곳이다.

이 중에서 경상남도는 2011년도부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의원과 도단위 장애인단체들이 발 벗고 나선 적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 및 관련자들의 단체인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조례 제정 반대에 부딪혀 그 발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2012년 10월 12일). 당시 도의회의 입장은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장애인단체이므로 이 단체와도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전국적으로 매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자체별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도의회의 인권의식 부재로 인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도 경상남도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조례제정을 반대한 이유에 대하여 <①장애인복지시설이 인권센터를 위탁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②인권실태 임의조사권에 관한 조항, ③복지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사회 거주장애인을 각각 별도로 실태조사하도록 한 조항, ④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인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인권전문기관에서 정기적 방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강력한 조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①장애인복지시설이 인권센터를 위탁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대전, 강원, 부산, 충남, 경북의 조례에도 명시된 바 있으며, ②인권실태 임의조사권에 관한 조항은 서울·제주의 조례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조사권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으며, 부산·충남의 조례에서 접수된 사례의 관련 자료수집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으며, 경북은 당시 경남의 조항보다 훨씬 강력하게도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임의조사권을 분명하게 명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③복지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사회 거주장애인을 각각 별도로 실태조사하도록 한 조항은 실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자체의 조사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시설 거주장애인과 지역사회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 내용이 달라 이미 각각 조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인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인권전문기관에서 정기적 방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한 조항은 당시 경상남도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만 제시되었던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2011년에 실시되었던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조사」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상담할 외부 통로를 알지 못해 누구와도 상담해 보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71.5%에 달했던 결과를 반영한 조치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변명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조례의 제정을 거부했던 경상남도의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단 2곳 중 한 곳을 경상남도로 만든 역사적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제정 문제는 역사적 불명예만 안기는 것으로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도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늦게 제정되는 지역인 만큼 확실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장차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역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임을 감히 주장해 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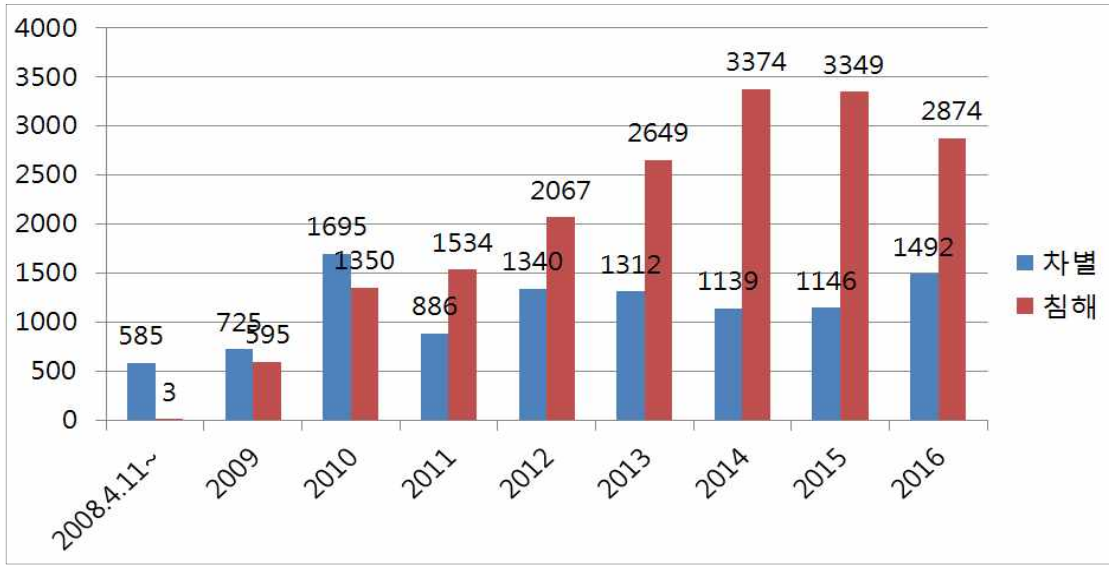


부록 1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I. 진정사건 접수 : 정신의료기관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접수현황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28,115	10,320	17,795	
2008.4.11.~	588	585	3	
2009	1,320	725	595	
2010	3,045	1,695	1,350	
2011	2,420	886	1,534	
2012	3,407	1,340	2,067	
2013	3,961	1,312	2,649	
2014	4,513	1,139	3,374	
2015	4,495	1,146	3,349	
2016	4,366	1,492	2,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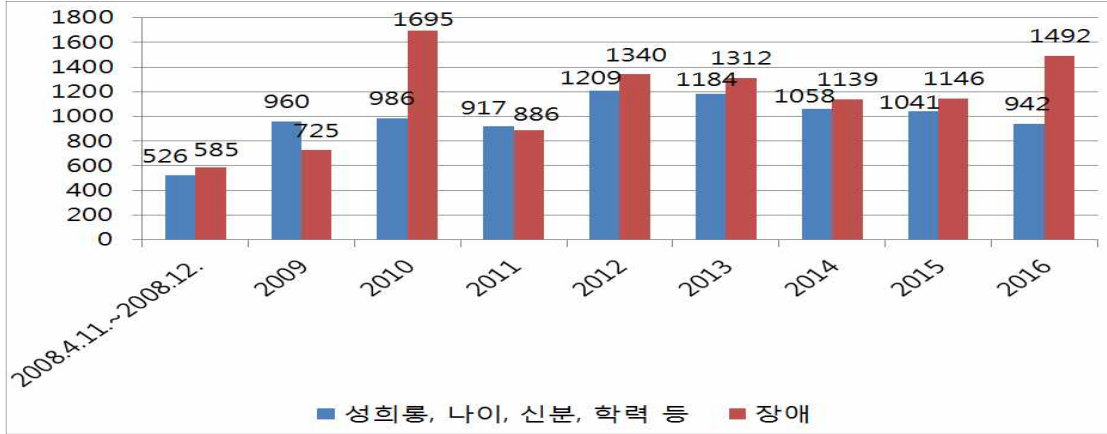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II.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6. 12.	진정건수	23,413	12,440	10,973
		비율(%)	100.0	53.1	46.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6. 12.	진정건수	19,144	8,824	10,320
		비율(%)	100.0	46.1	53.9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7	1,041	1,146
		비율(%)	100.0	47.6	52.4
	2016. 1.~ 2016. 12.	진정건수	2,434	942	1,492
		비율(%)	100.0	38.7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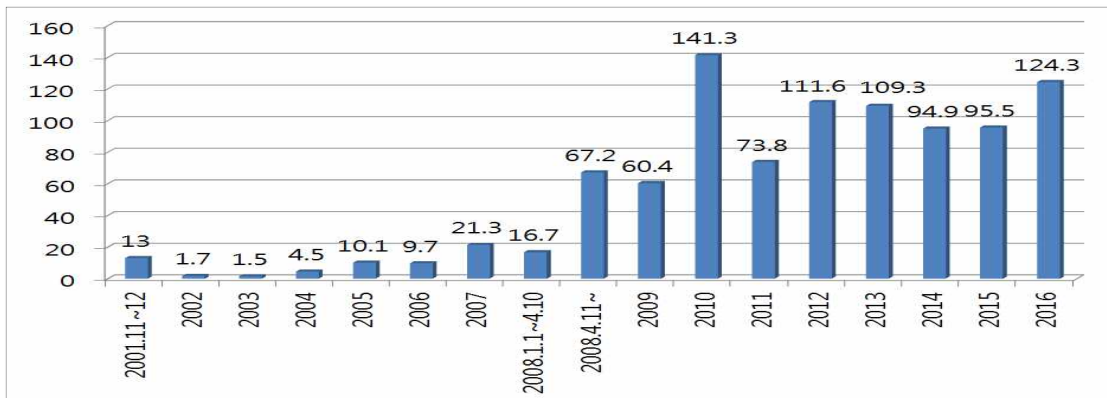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총	장애차별 진정사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1 (11~ 12월)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008 (1.1~ 4.10)	시행이 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10,97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0,32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월평균	60.3	10	6.5	1.7	1.5	4.5	10.1	9.7	21.3	16.5	93.2	67.2	60.4	141.3	73.8	111.6	109.3	94.9	95.5	1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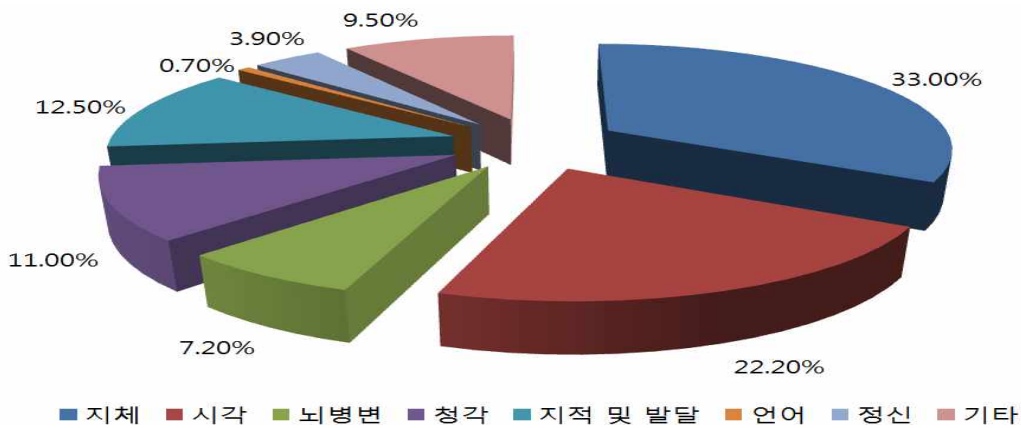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0,320	3,403	2,295	741	1,137	1,290	73	406	976
	비율	100.0	33.0	22.2	7.2	11.0	12.5	0.7	3.9	9.5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4.9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5	8.1	24.2	0.9	5.4	5.4
2012	건수	1,339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4	6.5	10.6	17.3	1.0	3.5	10.0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8	0.5	3.8	10.6
2014	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5	8.1	9.9	9.1	1.1	4.8	6.2
2015	건수	1,146	334	440	93	101	100	5	30	43
	비율	100.0	29.2	38.4	8.1	8.8	8.7	0.4	2.6	3.8
2016	건수	1,492	629	328	101	93	246	7	44	44
	비율	100.0	42.2	21.9	6.8	6.2	16.4	0.5	3.0	3.0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 (천명)	2,490	1,281	253	251	250	211	19	99	126
	비율	100.0	51.4	10.2	10.1	10.0	8.5	0.8	4.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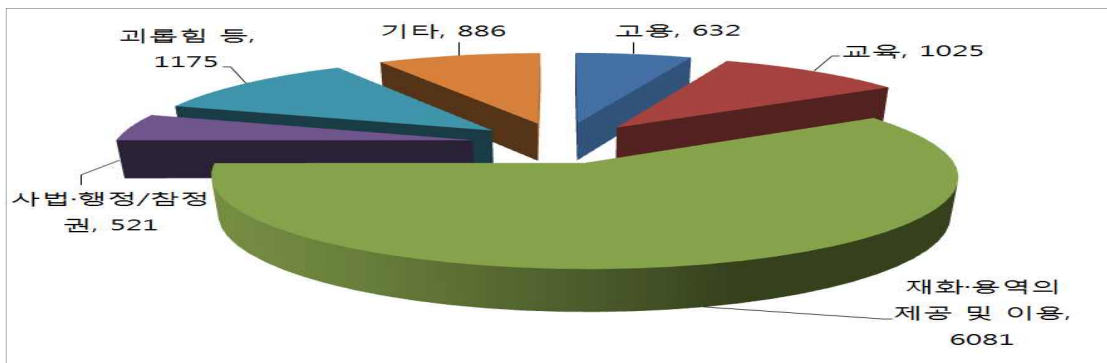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6.12.31.)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5. 12.(보건복지부)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10,320	632	1,025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1,175	886
	비율	100.0	6.1	9.9	58.9	15.2	6.5	12.3	6.8	15.1	3.0	5.0	11.4	8.6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6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7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	8.3	5.8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6	69	55	733	129	82	125	99	286	12	37	121	131
	비율	100.0	6.0	4.8	64.0	11.3	7.2	10.9	8.6	25.0	1.0	3.2	10.6	11.4
2016	접수	1,492	56	536	642	251	48	117	58	160	8	43	89	126
	비율	100.0	3.8	35.9	43.0	16.8	3.2	7.8	3.9	10.7	0.5	2.9	6.0	8.4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6.12.31.)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분		2001.11.25. ~ 2008.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2013. 1. 1. ~ 2013.12.31.	2014. 1. 1. ~ 2014.12.31.	2015. 1. 1. ~ 2015.12.31.	2016. 1. 1. ~ 2016.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9년 (2008. 4.~ 2015.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10320
	월평 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5	124.3	111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632
	월평 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1025
	월평 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11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2	6081
	월평 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5	65.4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7	43	521
	월평 균	-	6.3	3.5	3.3	6.7	7.8	5.9	5.1	3.1	3.6	5.6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5	2061
	월평 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9	22.2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0,320	3,403	2,294	741	1,137	1,290	73	406	976	
고용	632	229	67	50	102	48	12	36	88	
교육	1,025	429	81	54	57	327	4	13	60	
재 화 와 용 역 의 제 공 및 이 용	재화·용역 일반	1,567	513	328	181	128	232	11	57	117
	보험·금융	675	154	123	66	126	101	7	56	42
	시설물 접근	1,265	867	182	92	16	13	1	3	91
	이동 및 교통수단	701	367	118	54	23	40	5	2	92
	정보접근·의사소통	1,560	37	1,036	17	329	26	6	2	107
	문화·예술·체육	313	64	26	16	59	119	-	7	22
사법·행정	358	73	83	19	43	73	5	19	43	
참정권	163	58	29	7	3	8	-	3	55	
괴롭힘 등	1,175	305	69	115	208	224	12	138	104	
기타	886	307	152	70	43	79	10	70	155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가. 고용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632	245	83	59	15	26	141	3	60
	비율	100.0	38.8	13.1	9.3	2.4	4.1	22.3	0.5	9.5
	공공	211	117	7	29	11	6	18	2	21
	민간	421	128	76	30	4	20	123	1	39
2008	합계	41	19	5	6	1	0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0.0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0	1	1	1
	민간	23	8	4	4	0	0	7	0	0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0	5	1	0	2	0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0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0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0.0	11.0
	공공	30	11	0	8	3	1	4	0	3
	민간	52	16	12	5	0	2	11	0	6
2011	합계	64	23	10	4	1	0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0.0	26.6	1.6	12.5
	공공	14	8	0	0	0	0	2	1	3
	민간	50	15	10	4	1	0	15	0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0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0.0	9.8
	공공	34	18	4	2	1	2	4	0	3
	민간	48	15	6	3	0	3	16	0	5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0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0.0	16.0
	공공	29	15	1	4	1	0	2	0	6
	민간	46	13	9	2	0	1	15	0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0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0.0	4.3
	공공	24	16	1	4	2	0	1	0	0
	민간	70	22	10	7	1	5	21	0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0	14
	비율	100.0	29.0	11.6	4.3	1.4	13.0	20.3	0.0	20.3
	공공	18	11	0	2	1	2	0	0	2
	민간	51	9	8	1	0	7	14	0	12
2016	합계	56	27	5	5	2	2	12	0	3
	비율	100.0	48.2	8.9	8.9	3.6	3.6	21.4	0	5.4
	공공	24	16	-	2	1	1	2	0	2
	민간	32	11	5	3	1	1	10	0	1

나. 교육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1025	72	58	173	127	86	36	473
	비율	100.0	7.0	5.7	16.9	12.4	8.4	3.5	46.1
	공공	860	32	33	126	115	83	26	445
	민간	165	40	25	47	12	3	10	28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2016	합계	536*	4	6	81	88	1	4	352
	비율	100.0	0.8	1.1	15.1	16.4	0.2	0.8	65.6
	공공	526	3	5	80	87	1	0	350
	민간	10	1	1	1	1	0	4	2

*2016년 특수학교 관련하여 504건이 집단으로 진정됨

다. 재화·용역 및 사범·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범·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6,081	1,567	675	1,265	701	1,560	313	521
	비율	100.0	25.8	11.1	20.8	11.5	25.7	5.1	100.0
	공공	2,417	693	63	554	396	508	203	491
	민간	3,664	874	612	711	305	1,052	110	30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54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1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41
	민간	258	87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35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4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79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1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3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90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3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68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3
2014	합계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1.0	16.0	24.5	2.8	100.0
	공공	224	67	8	49	43	48	9	48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13
2015	합계	733	129	82	125	99	286	12	37
	비율	100.0	17.6	11.2	17.1	13.5	39.0	1.6	100.0
	공공	188	38	8	38	35	65	4	35
	민간	545	91	74	87	64	221	8	2
2016	합계	642	251	48	117	58	160	8	43
	비율	100.0	39.0	7.5	18.3	9.0	25.0	1.2	100.0
	공공	208	87	9	46	39	27	1	41
	민간	433	164	39	71	19	133	7	2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175	22	30	27	193	132	678	93
	비율	100.0	1.9	2.6	2.3	16.4	11.2	57.7	7.9
	공공	164	6	2	4	30	5	98	19
	민간	1,011	16	28	23	163	127	580	74
2008	합계	42	0	0	3	5	7	26	1
	비율	100.0	0.0	0.0	7.1	11.9	16.7	61.9	2.4
	공공	2	0	0	0	0	1	0	1
	민간	40	0	0	3	5	6	26	0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0	0	4	0	12	1
	민간	87	0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0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0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0.0	21.0	15.2	47.6	8.6
	공공	19	0	1	0	4	1	12	1
	민간	86	4	3	0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0	10.8
	공공	17	1	0	0	2	0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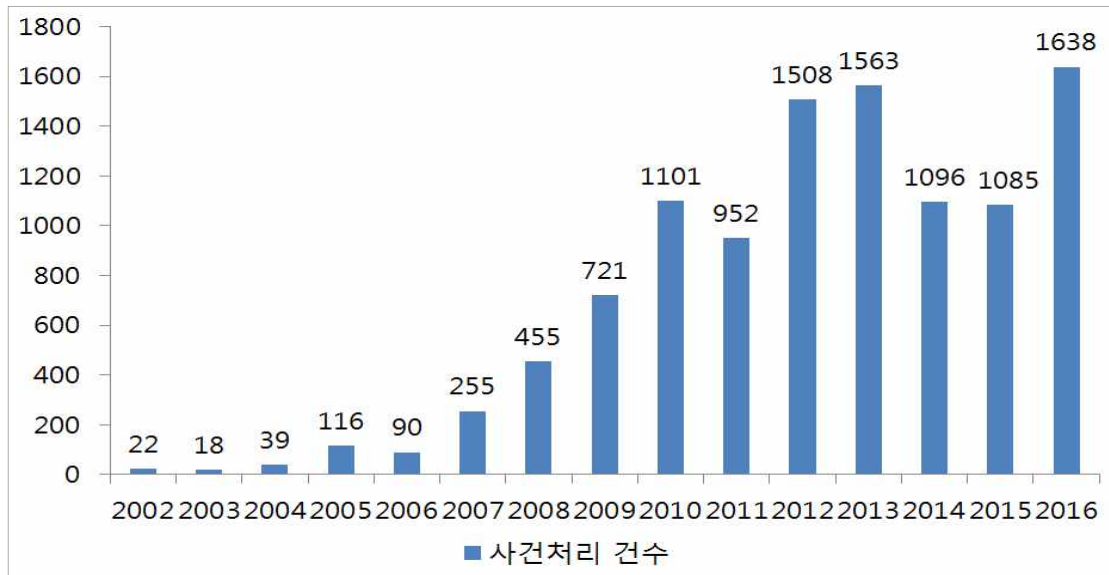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0	2	1	0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0	2	4	2	8	0
	민간	105	0	3	4	13	18	59	8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비율	100.0	1.7	2.5	0.8	19.0	8.3	59.5	8.3
	공공	22	0	0	0	3	0	17	2
	민간	99	2	3	1	20	10	55	8
2016	합계	89	1	0	3	21	3	50	11
	비율	100.0	1.1	0	3.4	23.6	3.3	56.2	12.4
	공공	20	0	0	0	6	0	10	4
	민간	69	1	0	3	15	3	40	7

IV.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659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38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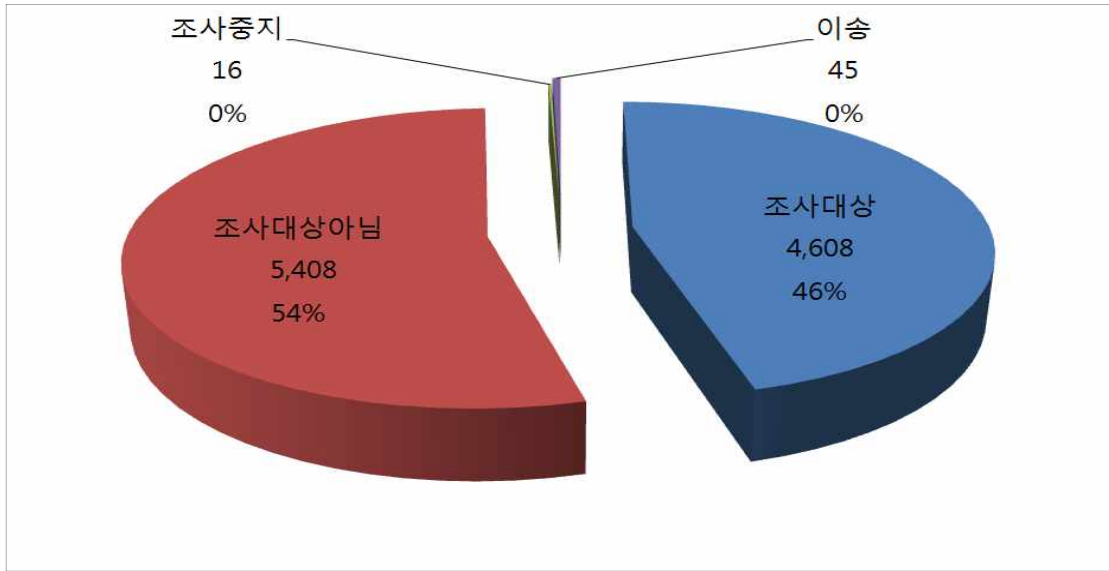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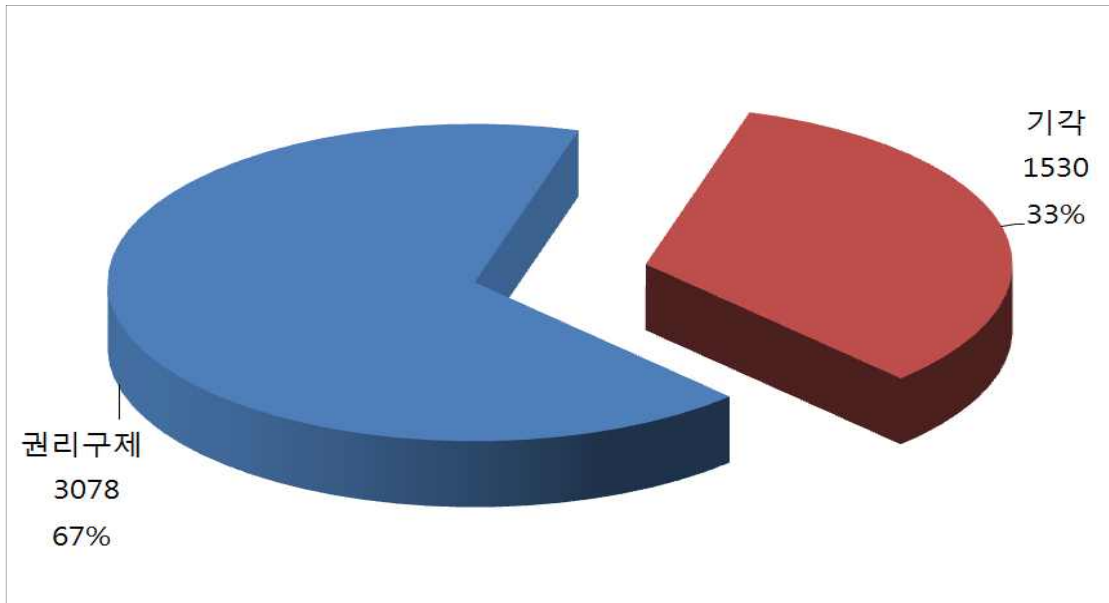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10,077	4,608	3,07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구성비 (%)	100.0	100.0	100.0	12.4	0.2	11.5	75.9				
			66.866.8					33.2			
			45.8						53.4	0.3	0.5
2008년	413	191	115	22	-	12	81	76	221 (139)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9.1	-	10.5	70.4				
			60.2					39.8			
			46.2						53.5	0.3	-
2009년	721	358	212	10	-	47	155	146	353 (238)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4.7	-	22.2	73.1				
			59.2					40.8			
			49.7						48.9	0.6	0.8
2010년	1,101	417	262	28	1	56	177	15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0.7	0.4	21.4	67.6				
			62.8					37.2			
			37.9						60.2	0.5	1.4
2011년	952	566	361	124	-	32	205	205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4.3	-	8.9	56.8				
			63.8					36.2			
			59.5						40.0	0.1	0.4
2012년	1,508	890	701	116	-	20	565	189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5	-	2.9	80.6				
			78.8					21.2			
			59.0						40.8	0.1	0.1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3년	1,563	807	643	29	-	79	535	164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4.5	-	12.3	83.2				
			79.7					20.3			
				51.6					48.3	-	0.1
2014년	1,096	528	319	17	1	61	240	209	560 (452)	3	5
구성비 (%)	100.0	100.0	100.0	5.3	0.3	19.1	75.2				
			60.4					39.6			
				48.2					51.1	0.3	0.5
2015년	1,085	417	216	18	-	19	179	201	662 (561)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7.9	-	8.8	83.3				
			51.7					48.3			
				38.4					61.1	-	0.6
2016년	1,638	434	249	19	3	29	198	185	1,197 (1,048)	-	7
구성비 (%)	100.0	100.0	100.0	7.6	1.3	11.6	79.5				
			57.4					42.6			
				26.5					73.1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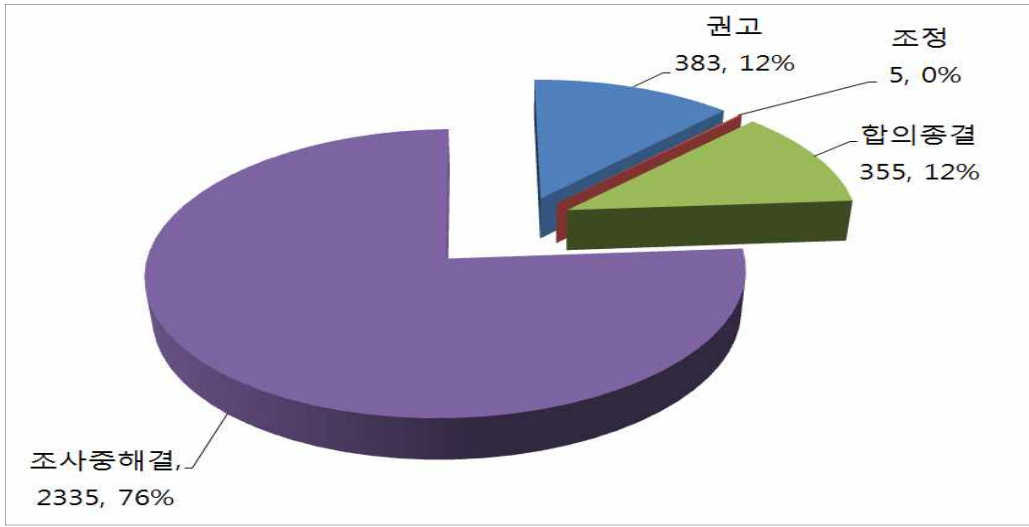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0,077	4,60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비율(%)	100.0	100.0	66.8				33.2			
				45.7					53.7	0.2	0.4
고용	건수	628	212	13	-	39	24	136	411 (329)	3	2
	비율(%)	100.0	100.0	35.7				64.2			
				33.8					65.5	0.4	0.3
교육	건수	996	232	14	-	37	122	59	761 (713)	-	3
	비율(%)	100.0	100.0	74.6				25.4			
				23.2					76.4	0	0.4
재화·용역	건수	5,927	3,317	308	5	194	1,906	904	2,591 (1,956)	9	10
	비율(%)	100.0	100.0	72.7				27.3			
				56.1					43.7	0.1	0.1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512	250	23	-	4	145	78	261 (176)	-	1
	비율(%)	100.0	100.0	68.6				31.2			
				48.9					51.1	0	0
괴롭힘 등	건수	2,014	597	25	-	81	138	353	1,384 (815)	4	29
	비율(%)	100.0	100.0	40.9				59.1			
				29.7					68.7	0.2	1.4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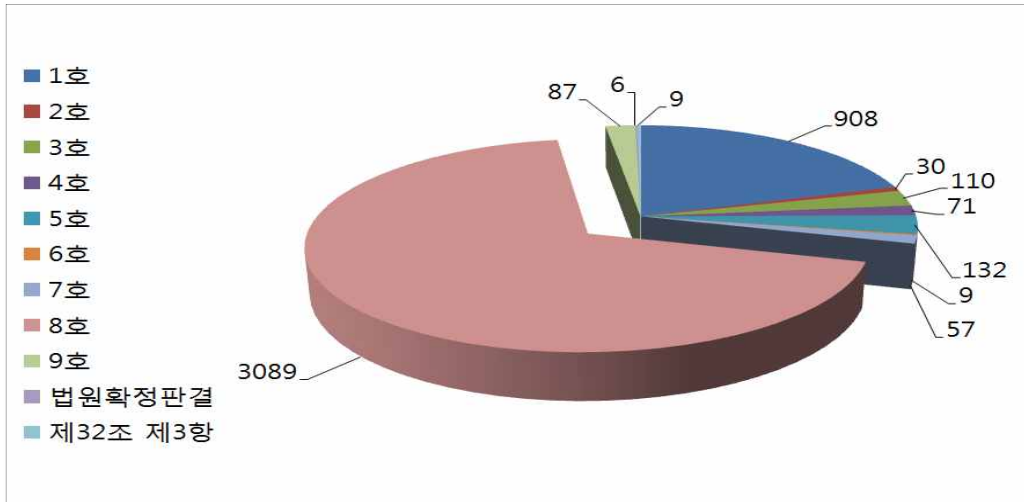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권고 사건 수	383	13	14	308	23	25

V.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16.12.31.)

처리건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법원확정 판결/ 헌법재판 소결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	
합계	5,408	908	30	110	71	132	9	57	3,989	87	6	9
구성비(%)	100.0	16.7	0.5	2.1	1.3	2.4	0.2	1.0	73.9	1.6	0.1	0.2
2008년	221	54	1	6	11	2	1	2	139	5	-	-
구성비(%)	100.0	24.4	0.5	2.7	4.9	0.9	0.5	0.9	62.9	2.3	-	-
2009년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구성비(%)	100.0	15.9	-	2.5	1.4	3.9	0.3	2.8	67.5	5.4	0.3	-
2010년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구성비(%)	100.0	34.2	0.3	1.5	2.9	2.4	-	0.9	55.7	1.9	0.2	-
2011년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구성비(%)	100.0	24.7	0.8	1.8	1.0	4.5	0.3	1.8	59.8	4.5	0.8	-
2012년	616	62	3	14	9	16	4	9	495	3	-	1
구성비(%)	100.0	10.0	0.4	2.3	1.5	2.6	0.6	1.5	80.4	0.5	-	0.2
2013년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구성비(%)	100.0	28.5	0.7	4.9	0.3	2.6	-	0.8	60.8	1.2	0.1	0.1
2014년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구성비(%)	100.0	9.3	0.5	1.4	1.9	3.0	0.2	0.4	80.8	1.8	-	0.7
2015년	662	48	1	8	7	14	1	12	561	8	-	2
구성비(%)	100.0	7.3	0.2	1.2	1.1	2.1	0.2	1.8	84.6	1.2	-	0.3
2016년	1,197	100	12	11	3	16	-	3	1,048	3	-	1
구성비(%)	100.0	8.4	1.0	0.9	0.3	1.2	-	0.3	87.5	0.3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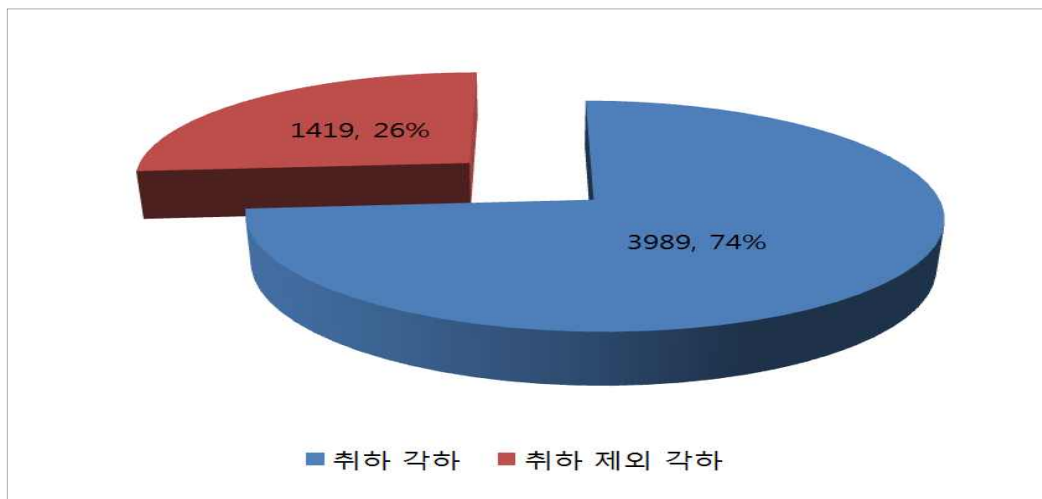
- * 1호 각하: 조사대상 아님
- ** 2호 각하: 거짓/이유없음
- *** 3호 각하: 조사를 원하지 않음
- **** 4호 각하: 1년 이상 경과
- ***** 5호 각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
- ***** 6호 각하: 익명/가명제출
- ***** 7호 각하: 적절하지 않음
- ***** 8호 각하: 진정취하/이중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경우 645건
- ***** 9호 각하: 기각건의 동일사실 재진정
- ***** 제32조 제3항: 조사중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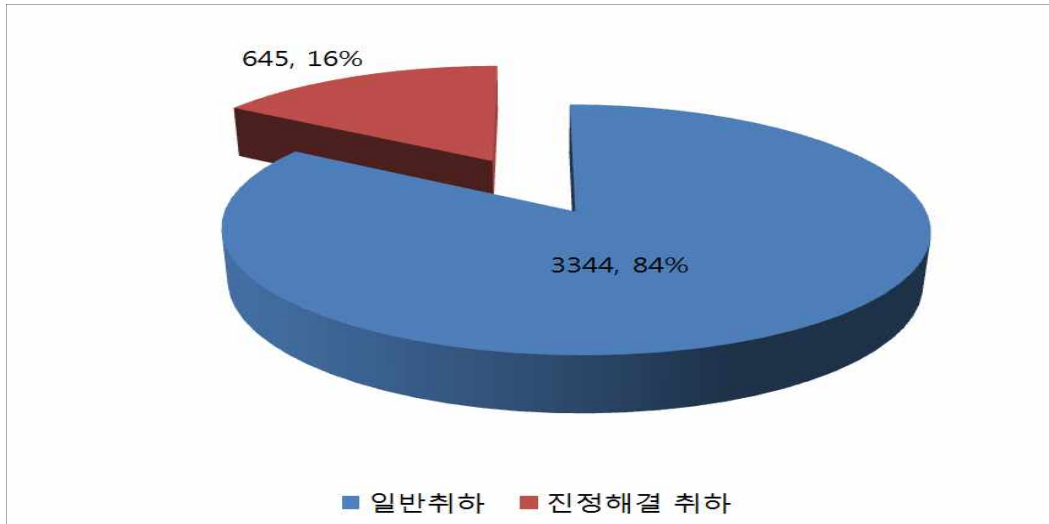
[그림 10]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 ~ 2016.12.31.)

나. 각하사건 중 진정인이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현황(2008.04.11.~2016.12.31.)

각하 처리건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8호)		
	5,408	3,989	
취하 구분		일반취하	진정해결 취하
사건수		3,344	645
취하사건중 해결 %		84%	16%



[그림 11] 각하 사건중 당사자 진정취하 비율(2008.4.11. ~ 2016.12.31.)



[그림 12] 당사자 진정취하 사건 중 진정해결 비율(2008.4.11. ~ 2016.12.31.)

붙임 1 :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붙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6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6)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와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 “20.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6)	<p>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2014)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 일정기준미만의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2016),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2016)</p>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6)	<p>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5), 장애인 권리옹호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2016), 탈시설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여성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33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34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없는 공항에는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와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 3. 한국공항공사 사장,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 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5. 각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관련 업무 담당 인권교육 실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고,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5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지시/격리·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격리·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p> <p>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p> <p>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기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p> <p>4.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p> <p>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p> <p>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p>
3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2016)	<p>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지도·감독 실시하,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p> <p>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p> <p>3. 한국해운조합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p> <p>4. 국민안전처장관은,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p>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개선 정책권고(2016)	<p>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p> <p>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p> <p>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3.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4. 인권교육을 강화 5.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
3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람 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람
4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 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 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41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에 대한 위원회 유권 해석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5-1.<추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 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 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 5-1.<추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 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

붙임3. 장애차별 진정사건 위원회 주요권고현황(2008.04.11~2016.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불수용 (시정명령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우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시하고 장애우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의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일부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중앙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중앙도서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의 차별 (16-진정-0542500)	- 손가락 장애를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채용 및 모집에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하여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6.11.14	검토중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08.12.22.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08.12.26.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6.13.	수용
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정087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수용
21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 	2014.11.1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2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2014.12.16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 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 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 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일부 이행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폭행피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5진정0860000)	- 사회복지법인 00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 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29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 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31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33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 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 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 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 고 	2010.8.9.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 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0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 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 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 행할 것을 권고 	2010.8.25.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 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 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 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 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42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2010.10.20.	일부 수용
4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 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 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 고	2011.1.6.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 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 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 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 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4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 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17.	수용
5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7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하철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6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애,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 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3.23.	수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90건) 일부 수용 (2건)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4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 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 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 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 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 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 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 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 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 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 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 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 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 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 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9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 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 치할 것을 권고 	2012.11.29.	불수 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 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 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 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 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시각장애인 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도록「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 할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 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 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 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 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 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 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 탈의실내 사물함·헬 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 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 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 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을 권고	2013.4.3.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 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 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 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 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 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 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 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촉 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 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접이 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90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 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 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 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 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 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 진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 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 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 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 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 어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 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실 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판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의 중 양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검토 중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 련하여 0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 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 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 육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로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 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0주민센터 장애 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	2015.9.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6진정0338800)	-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하여 발급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서 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 음성 변환바코드 생성처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본 내용을 점자 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산하기관의 점자체크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016.21.28	검토중
10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 내 이동권 제한 (15진정0919600)	-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이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12.28	검토중
10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15진정0349900)	- 00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2016.10.5	검토중
10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5464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6.8.	수용
10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광객 수송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미장착 (16진정02755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000자연휴양림의 관광객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설비 장착 등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 - 00군수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2016.12.7	검토중
10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이용시 시각장애인 차별 (16진정0746800)	- 피진정인에게 웹사이트 '00000'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서비스의 보안문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2016.11.14	검토중
10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775200)	-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6.12.7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량렌탈 거부 (16진정06923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인 좌측페달을 구 비할 것과 진정인등 장애인 운전자가 요청해 올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줄 것을 권고	2016.12.28	검토중
1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각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제한 (14진정0887600) (14진정0887500)	- 피진정인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 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2016.4.22	수용
1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1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철거 (16진정07956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	2016.11.14	검토중
1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15진정09759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 7.22.	검토중
1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택 임대사 장애인 차별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1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간식비 갈취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금 및 생계급여 중 증 빙하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가) 피진정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 도록 조치하고 나) 수급관리자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 유 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6.11.14	검토중
1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6진정02670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 - 00광역시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00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랍	2016.10.5	검토중
1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 이전 강요 (16진정0796200)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시설 이전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및 승강기내 공고문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 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 할 것 - 00시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할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6.12.28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16진정02227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 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권교육을 실시 	2016.5.13	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121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 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1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 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1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1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 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1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 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를 갖추어 줄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1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 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1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 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를 갖추어 줄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 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1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1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	2011.1.6.	수용
1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13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 	2011.6.7.	수용
1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2012.2.13.	수용
1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3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 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 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14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 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 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병 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4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00요양원에서 발 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치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간호 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 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 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 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1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체험홈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외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11.19	검토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 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

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16.8.4.] 제3조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1조

-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

- 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4조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0조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시행일 : 2016.8.4.] 제21조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3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이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2365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 인 쇄 | 2017년 4월

| 발 행 | 2017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7층

| 전 화 | (051) 710-9720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545-9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